

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4-4호



---

#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

2014. 8.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파악을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6개국 연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취합하였음.
- 본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관 개인의 의견 또는 견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둠.

# 목 차

## □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1. 미 국 .....	7
2. 영 국 .....	31
3. 프랑스 .....	43
4. 독 일 .....	51
5. 일 본 .....	64
6. 호 주 .....	78



국가별 제도개요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미국은 주정부 및 지역단위에 대부분의 교육 관련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교육 권한은 미비한 수준임.
- 주의 교육행정기관은 주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총괄하는 교육청으로 구성되며, 주지사·주교육감·주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2) 교육감 선출방식

- 미국은 주별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음.
  - 주민직선제 :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선거방식은 공직선거와 기본적인 내용이 비슷하며, 8개주에서 교육감 후보의 정당표방을 인정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 임명 : 교육위원회 위원을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함.
  - 주지사 임명 : 주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더라도 주별로 교육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 주의회 동의, 주교육위원회 의장 자문 등 추가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주민직선제를 채택하는 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지사 및 교육위원회 임명방식을 도입하는 주는 증가하는 추세임.
-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과 자율성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평가임.

## 2. 영국(United Kingdom)

###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영국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일원화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까지 관여하는 중앙집권적 양태를 보이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원적 구조를 지님.
- 기초단위에서만 교육감제도를 운영하고 광역단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없으며, 교육행정은 ‘중앙정부, (기초단위) 지자체, 단위학교별 학교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음.

### (2) 교육감 선출방식

- 영국의 교육주체간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교육감과 학교협의체의 장이 한국의 교육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임명된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임명되고, 교육위원회내 교육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게 됨.
- 학교협의체는 단위학교 등의 연합체로서 의장은 매년 첫 협의체 회의에서 선출되고, 지역별로 선거방식 및 선출절차는 상이함.

###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학교행정 및 학교예산편성에 있어 지자체의 기능 및 역할이 지속적·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왔으며, 이는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구도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달성을 위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평가임.
- 따라서 특정정당의 지속적 영향력 아래 놓인 지방의회에 의해 교육행정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학교협의체 의장 선출방식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증대라는 기본방침속에 현행대로 지역별로 자율적 결정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3. 프랑스(French Republic)

####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1980년대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으로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되었으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는 유지되고 있음.
- 프랑스에는 지방교육을 관할하는 국가교육행정구역(la 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de l'éducation nationale)으로서 '아카데미'(Académie)가 존재하며, 각 아카데미의 수장으로서 교육감(recteur)을 두고 있음.

#### (2) 교육감 선출방식

- 프랑스의 교육감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별도의 의회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박사연구지도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하나, 정부 부처 처장이나 국장 출신 고위 공무원도 교육감에 임명될 수 있음.
- 최근에는 행정적 전문성이 보다 중요해져 중앙 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고위 공무원 출신도 임명되고 있음.

####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프랑스 교육감은 각 아카데미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대표자로서 지방분권 개혁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교육감의 임명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교육감이 대폭 교체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항상 제기되고 있음.

#### 4.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독일의 교육제도는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위임형의 성격을 가지며, 교육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각 주(州)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주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의 운영자로서 외부 학교사무를 관장하며, 각급 지자체별 교육행정청이 내부 교육사무를 관할함.

##### (2)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

- 독일의 경우 주단위의 자치적 성격이 강하여, 주정부마다 교육행정체계의 조직 및 구성이 통일적이지 못함.
- 대체로 주정부의 교육부, 관구교육청, 시군단위 교육청이 있으며, 지방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주교육부 장관, 관구교육청장, 시군교육청장으로 구성됨.
-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고, 주교육부 장관이 주단위 지방교육청장을 임명하는 방식임.

#####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독일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동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 지방교육청장의 임명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방자치행정기관으로 학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등 현제도의 보완을 추구하고 있음.

## 5. 일본(Japan)

###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일본은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교육행정기관을 중앙의 문부과학성과 지방의 교육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음.
- 지방교육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공공단체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상황속에서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업무는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 운영하고 있음.

### (2) 교육감(교육장) 선출방식

- 도도부현 및 시정촌 단위로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는 지방공공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5명으로 구성됨.
- 교육장은 지방공공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음.
-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위원과 교육장에 폭넓은 인재 기용을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음.

###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일본은 1948년 교육위원 직선제를 실시하였으나, 교육위원회내 당파 대립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56년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위원 임명제로 전환하였음.
- 교육행정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교육위원장과 교육장을 일원화한 (신)교육장제도를 2015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나, 지방공공단체장과 교육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교육행정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6. 호주(Australia)

### (1) 지방교육자치 특징

- 호주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헌법에 의해 각각의 통치권을 부여 받고 있으며, 교육권한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교육부의 정책결정은 의원을 겸직하는 주교육부장관이 주도하며, 교육감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청장이 장관을 보좌하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2)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

- 지방교육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받지는 않고 있음.
- 일례로 뉴사우스웨일주의 경우 주지사가 선발한 인사들로 구성된 최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가 지방교육청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의회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 호주의 지방교육청장은 별도의 교육경력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력이 없는 자가 지방교육청장으로 임명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 학교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남호주 교육부에서는 경찰국장이었던 토니 해리슨을 교육청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에 교육위원회와 야당에서는 교육 비전문가의 교육개혁 능력부족, 당내 포상성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였음.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 1. 미국의 교육제도

### (1)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 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주정부 및 지역 단위에 대부분의 교육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이 위임되어 있는 지방정부 위임형으로 분류됨.
- 교과과정의 결정, 교육관련 세금의 징수, 그리고 교사·교수·교직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의 자격 등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 및 책임은 주정부에 있으며, 연방정부내에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존재하지만 교육과정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
- 이는 헌법상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0조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sup>1)</sup> 미국의 헌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연방정부에 속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 미국 수정헌법 제10조.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교육에 관련된 행정 및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의 수준 및 성취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음.<sup>2)</sup>
- 미국 건국 이후 약 200년 동안 연방정부 수준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담당부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1979년에 카터 행정부하에서 통과된 “교육부 조직법(the 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에 근거하여 1980년 5월 4일이 되어서야 연방정부내에 교육부가 신설되었음.<sup>3)</sup>
- 연방정부의 교육부가 담당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sup>4)</sup>
  -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연방정부의 사명을 강화함.
  - 각 주, 지역학교 시스템, 여타의 주교육기관, 사적 부문, 공적 및 사적 비영리 교육연구기관, 지역 공동체 기반 조직,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 및 보완함.
  - 연방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대중,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함.
  -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한 연구, 평가,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교육의 유용성 및 질의 향상을 도모함.
  - 연방교육 프로그램의 조정 및 운영을 개선함.
  - 연방교육 프로그램이 대통령, 의회, 그리고 공공 대중들에 대해 개선된 책임성을 담보할 있도록 함.

2) 장기원 외. 200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정책보고서.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3) <http://www2.ed.gov/about/overview/mission/mission.html?src=ln> (검색일: 2014. 7. 16.)

4) <http://www2.ed.gov/about/overview/mission/mission.html?src=ln> (검색일: 2014. 7. 16.)

- 20세기 후반에 들어 미국 교육의 질적 저하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2002년 초 부시행정부 하에서 제정된 “No Child Left Behind” 법 등 연방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을 통해 주정부 차원의 교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도 교육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주정부 및 주정부내의 교육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음.
-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연방정부는 총 교육에 지출되는 재정의 약 10% 내외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의 재정 지출은 주정부 혹은 지역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sup>5)</sup>

#### 나. 일반행정과의 관계

-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주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주정부내에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 주정부내 교육행정 담당기관은 완전히 독립되어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일반적으로 주정부, 주지사 및 주의회의 관할 아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sup>6)</sup>

5) [http://www.usgovernmentpending.com/year\\_spending\\_2014USbn\\_14bs2n\\_20#usgs302](http://www.usgovernmentpending.com/year_spending_2014USbn_14bs2n_20#usgs302) (검색일: 2014. 7. 16.)

6)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장기원 외. 200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정책보고서.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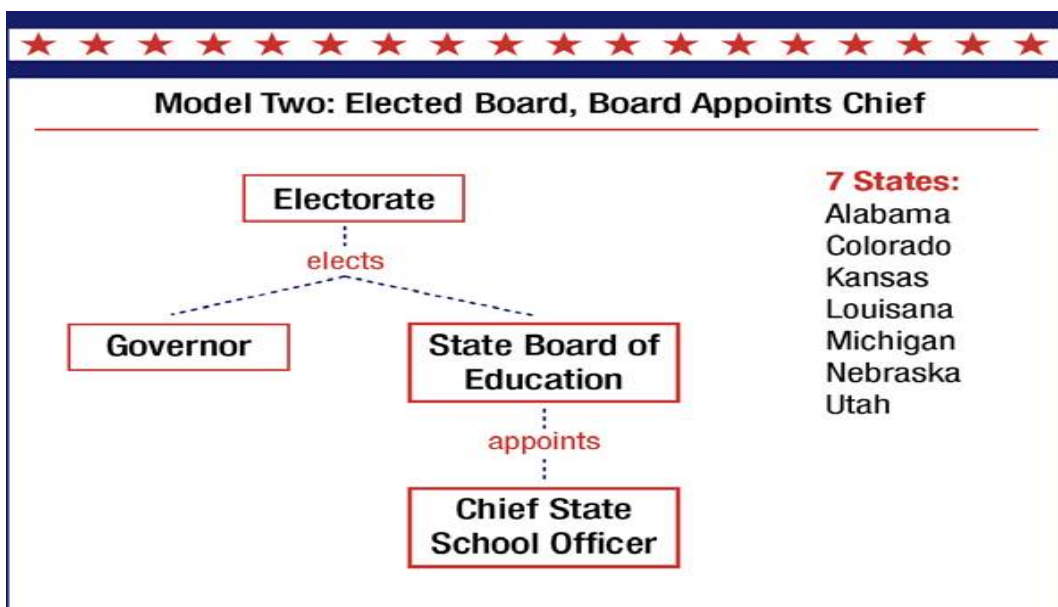
- 주의 교육행정기관은 주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와 교육감이 총괄하는 교육청으로 구성됨.
- 주지사, 교육감, 그리고 주교육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은 주에 따라 다르며, 이들의 관계는 선출 및 임명 방식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될 수 있음.<sup>7)</sup>
- 첫째, 알래스카, 아칸소,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미주리,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14개주는 주지사가 과반 혹은 전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지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미시시피주의 경우 총 9명의 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주지사가 5명, 부지사가 2명, 주하원의장이 나머지 2명을 지명함.
  - 오리건주의 경우 오리건 교육투자위원회(the Oregon Education Investment Board, OEIB)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권한을 가지며, 13명의 위원 가운데 12명을 주지사가 지명함. 첫 번째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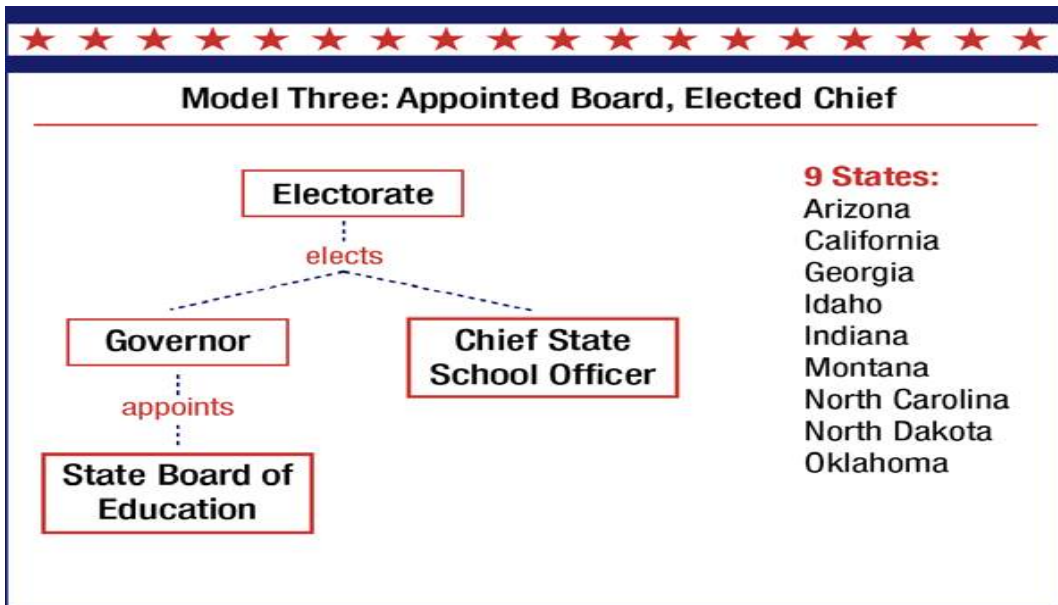
7) 이하의 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구성은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Models."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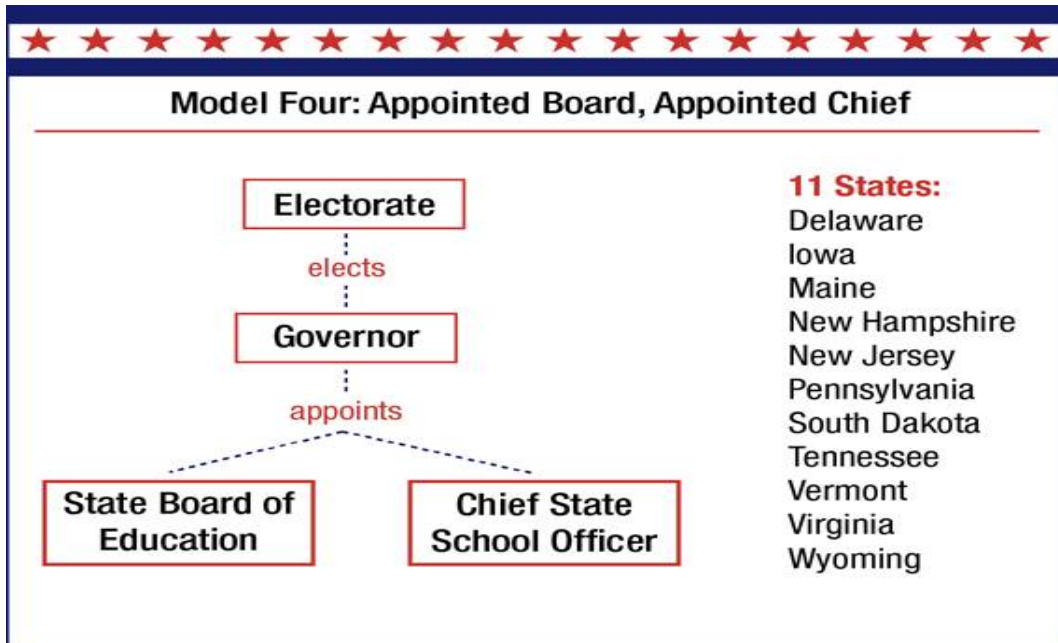
- 두번째 모델은 유권자가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임. 앨라배마, 콜로라도,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네브라스카, 유타 7개주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이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셋째,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9개주에서는 주지사와 주교육감이 유권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주지사가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 이 9개주 가운데 애리조나, 아이다호, 인디애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5개 주의 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 이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마지막으로,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인, 뉴햄프셔,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11개주에서는 주지사만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주교육위원회의 과반수 혹은 전체 위원들과 교육감은 주지사가 임명함. 이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위의 모델에 속하지 않은 9개주와 컬럼비아특별구 역시 위의 네 가지 모델의 수정된 형태로 구성된 조직을 가지고 있음.
  - 오하이오주의 경우, 19인의 주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11인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8인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이와 같이 구성된 주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함.
  - 네바다주의 경우, 11인의 주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7인이 의결권을 가지며, 이 중 4인은 각 의회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주지사가 교육감과 3인의 교육위원을 임명함.
  - 워싱턴주에서는 주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주 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연임만이 가능한 5인은 지역 학교위원회 선거(2인은 워싱턴주 동부, 3인은 워싱턴주 서부), 1인은 주에서 승인한 사립학교 자문위원회(the Private School Advisory Committee, PSAC)의 선거를 통해 선출됨. 여기에 워싱턴주 학생평의회 연합(the Washington

Association of Student Councils, WASC)에서 선출하는 학생대표 2인, 주지사가 임명하는 7인, 그리고 주교육감까지 포함하여 총 16인의 주교육위원회가 구성됨.<sup>8)</sup>

- 뉴욕주에서는 과반의 주교육위원회의 위원을 주의회에서 임명하며, 주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함.
-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주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주지사가 1명의 주교육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나머지 16인의 위원을 주의회에서 임명함.
- 텍사스주에서는 주교육위원회 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주지사에게 의해 임명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사무총장을 겸함.
- 컬럼비아 특별구와 뉴멕시코주는 주교육위원회 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이들 주에서는 주교육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문위원회의 역할만을 수행함. 컬럼비아 특별구의 교육감은 워싱턴 시장이 임명하며, 뉴멕시코 주의 교육감은 주지사가 임명하지만 반드시 주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는 주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음. 미네소타주의 경우 주지사가 주교육감을 임명하는 반면, 위스콘신주는 주민 직선으로 주교육감을 선출함.

---

8) <http://www.sbe.wa.gov/membership.php#govappointees> (검색일: 2014. 7. 22)

(3)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범위

- 미국의 주교육감을 지칭하는 직함은 주에 따라 다른데, Superintendent, Commissioner, Director, Secretary 등이 쓰이고 있으며, “Superintendent of Education (또는 Public Instruction)” 혹은 “Commissioner of Education”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임.<sup>9)</sup>
- 다음은 각 주별 교육감의 공식 명칭임.

주	교육감의 공식 명칭
앨라배마	Alabam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알래스카	Alaska Commissioner of Education
애리조나	Arizon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아칸소	Arkansas Commissioner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Californi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콜로라도	Colorado Commissioner of Education
코네티컷	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
델라웨어	Delaware Secretary of Education
컬럼비아 특별구	District of Columbi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플로리다	Florida Commissioner of Education
조지아	Georgia State Superintendent of Schools
하와이	Hawaii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아이다호	Idaho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일리노이	Illinois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인디애나	Indian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아이오와	Iowa Department of Education Director
캔자스	Kansas Commissioner of Education
켄터키	Kentucky Commissioner of Education
루이지애나	Louisian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9) [http://ballotpedia.org/Superintendent\\_of\\_Schools](http://ballotpedia.org/Superintendent_of_Schools) (검색일: 2014. 7. 20.)

메인	Maine Commissioner of Education
메릴랜드	Maryland Superintendent of Schools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Secretary of Education
미시간	Michigan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미네소타	Minnesota Commissioner of Education
미시시피	Mississippi Superintendent of Education
미주리	Missouri Commissioner of Education
몬태나	Montan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네브래스카	Nebraska Commissioner of Education
네바다	Nevad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뉴햄프셔	New Hampshire Commissioner of Education
뉴저지	New Jersey Commissioner of Education
뉴멕시코	New Mexico Secretary of Education
뉴욕	New York Commissioner of Education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오하이오	Ohio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오클라호마	Oklahom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오리건	Deputy Oregon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Secretary of Education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Commissioner of Education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Secretary of Education
테네시	Tennessee Commissioner of Education
텍사스	Texas Commissioner of Education
유타	Utah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버몬트	Vermont Secretary of Education
버지니아	Virginia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워싱턴	Washington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Superintendent of Schools
위스콘신	Wisconsin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와이오밍	Wyoming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 주교육감의 권한에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음.<sup>10)</sup>
  - 주교육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 수행
  - 주교육청의 직원 선발 및 임면
  - 교육 규칙과 교육 예산의 운영 및 개선
  - 교육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
  - 교육 법령의 준수 보장
  - 학교행정과 관련된 논쟁사안에 대한 중재
  - 주지사, 주의회, 주교육위원회 및 주민에게 교육현황을 보고하는 일 등
- 한편, 주교육위원회는 각 주마다 세부적으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sup>11)</sup>
  - 교육과 관계되는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정, 조례 등의 채택과 집행
  - 주교육청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 설정 및 직원의 임명
  - 전반적인 교육조건에 관련된 최저 기준의 설정
  - 교원의 자격기준과 자격증 제도 수립
  - 예산의 편성
  -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실시, 평가
  - 법률에 의한 교육관련 자문기관 설치
  -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 교육정책에 대한 주지사와 주의회에 대한 자문 제공 등

10) 장기원 외. 200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정책보고서.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11) 장기원 외. 200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정책보고서.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 2. 미국의 교육감 자격요건

- 주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은 주의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일정 기간 이상 국내 혹은 해당 주에서 거주한 일정 연령 이상의 유권자만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보통 선수의 제한은 없으나, 캘리포니아 주는 예외적으로 교육감의 3선을 금지하고 있음.<sup>12)</sup>
- 현재 유권자 투표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12개 주<sup>13)</sup>의 경우,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애리조나주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주정부의 공직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최소한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애리조나 주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25세 이상의 시민이어야 함.
  -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9조 제2항 및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20항과 제201항은 과거에 뇌물 수수, 공금 횡령이나 절도, 위증,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도모한 경력이 없으며, 주 헌법 제9장 제2항이 개정된 1990년 11월 6일 이후 두 번 이상 같은 공직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등록된 유권자들만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지아주 헌법 제5조 제3항과 조지아주 법 제20조 제2항의 제31절은 교육감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최소한 10년이 경과하였

---

12)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13)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위스콘신 등.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Models."

- 으며, 조지아주에 4년 이상 거주한 만 25세 이상의 시민이어야 함. 또한,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에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없는 4년제 대학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아이다호주 법률은 교육감 후보자를 학사 학위 및 행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음.<sup>14)</sup>
  - 인디애나주 법률 제3장 제8조 제1항 제10.5절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 이전 최소 2년 이상 인디애나 주에서 거주한 시민이어야 함.
  - 몬태나주 헌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으로 “몬태나주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2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감 후보자는 몬태나 주의 법률이 정하는 바의 교육 자격요건(교육관련 학사 학위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노스캐롤라이나주 헌법 제6조 6항은 교육감을 포함한 주 선출직 공직자 후보 자격을 21세 이상의 유권자로 규정하고 있음.
  - 노스다코타주의 법률 제15장 제1조 제2항의 제1절은 교육감 후보 자격을 25세 이상의 노스다코타주 유권자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노스다코타주의 교육감 후보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sup>15)</sup>
  - 오클라호마주 헌법 제6조 제3항은 교육감을 포함한 주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은 선거의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 오클라호마주의 유권자였던 3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헌법 제6조 제7항은 교육감을 포함한 주 공직자 후보들이 연방법 혹은 주의 법률에 규정된 중죄 혹은 선거와 관련된

14)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15)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범죄로 인한 형벌을 선고받지 않았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연령을 초과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워싱턴주 헌법 제3장 제25항은 교육감을 포함한 주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워싱턴 주의 유권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는 주의 경우, 대체로 여타의 주 선출직 공직자 후보에게 요구되는 사항과 동일한 조건을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하며, 조지아주와 몬태나주가 예외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별도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주 가운데 일부는 교육감 후보에게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감 자격요건은 교육감을 주민 직접선거로 뽑지 않는 여타의 주에서도 볼 수 있음. 네바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은 “교육 및 학교 행정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sup>16)</sup> 혹은 “5년 이상 교육 행정에 종사한 경력을 소지한 교육행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sup>17)</sup>와 같은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음.<sup>18)</sup> 이외에 아칸소 주의 교육감은 교사자격증, 알래스카주의 교육감은 행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sup>19)</sup>

16) Nevada Revised Statutes 385.160 Qualifications(검색일: 2014. 7. 22).

17) West Virginia Code 제18장 제3절(검색일: 2014. 7. 22).

18) 이외에도 앨라배마,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유타, 와이오밍 주 등에서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19)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 한편,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메릴랜드, 미시시피 주는 교육 혹은 교육행정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교육감 후보로 제한하고 있으며, 앨라배마, 델라웨어 주는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sup>20)</sup>
- 이외에 코네티컷,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주는 전반적인 교육 행정 분야에서의 자질 및 경험을 언급하는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음.

### 3. 미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 (1) 주민직선제 방식

##### 가. 선거 실시

-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는 주의 경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연방 상하원선거 및 주 공직선거와 함께 11월에 실시함.
  - 위스콘신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스콘신주 대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 홀수 연도에 함께 교육감을 선출함.
- 여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본선거일 이전에 교육감선거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은 예비선거를 실시하며, 예비선거를 통과한 후보자 1인 혹은 2인이 본선거에 진출함.

20)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나. 선거비용

-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 규정 역시 여타의 공직선거와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함.
  - 미국의 선거운동법은 대체로 후보자가 모금할 수 있는 기부금에 대한 제한과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선거비용을 규제하며, 강제적으로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예를 들어 워싱턴주의 경우 개인이나 정치위원회, 노동조합, 기업 등이 개별 교육감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선거 당 1,900 달러로 제한됨.
  - 한 교육감 후보자가 예비선거를 통과하여 본선거에 진출할 경우, 이 후보는 한 개인으로부터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각 1,900 달러씩 총 3,800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음.<sup>21)</sup>
- 다만, 연방정부 대통령선거의 비용 규제와 같이 주에서 권장하는 지출한도를 준수하는 후보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주도 있음.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용지출한도 (2014년 예비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의 경우 총 비용한도는 5,444,000 달러)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고자 서약한 경우, 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유권자 정보가이드에 250 단어 이내로 작성된 자신의 홍보 성명을 게재할 수 있음.
  - 2014년의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Gutierrez 후보, Torlakson 후보, Tuck 후보 모두 이 한도를 준수하여 자신의 홍보 성명을 유권자 정보 가이드에 게재하였음.<sup>22)</sup>

21) <http://www.pdc.wa.gov/public/contributionlimits.aspx> (검색일: 2014. 7. 24)

- 위스콘신주 역시 주에서 설정한 지출한도를 준수하는 후보에게 주 선거비용기금(the Wisconsin Election Campaign Fund, WECF)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주교육감 후보자에게 설정된 지출한도는 2010년 기준으로 215,625달러이며, 후보자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한도는 20,000달러, 1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은 10,781달러 이하여야 함. 이러한 한도를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최대 97,03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sup>23)</sup>
- 위스콘신 주의 선거보조금 수령에 대한 조건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만약 1인 이상의 상대후보자가 선거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지출한도를 준수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보조금을 신청한 후보자는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sup>24)</sup>

#### 다. 정당표방

-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는 12개주 가운데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8개주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표방을 허용하고 있음.
- 상기의 8개 주 가운데 인디애나,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교육감은 민주당 소속이며,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주의 교육감은 공화당 소속임.<sup>25)</sup>

22) <http://voterguide.sos.ca.gov/candidates/list-candidates.htm> (검색일: 2014. 7. 24)

23) [http://gab.wi.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63/wecf\\_spending\\_limits\\_pdf\\_80094.pdf](http://gab.wi.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63/wecf_spending_limits_pdf_80094.pdf) (검색일: 2014. 7. 24)

24) [http://gab.wi.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63/wecf\\_spending\\_limits\\_pdf\\_80094.pdf](http://gab.wi.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63/wecf_spending_limits_pdf_80094.pdf) (검색일: 2014. 7. 24)

-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sup>26)</sup>, 워싱턴<sup>27)</sup>, 위스콘신 주 등 나머지 4개주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하고 있음. 위스콘신 주의 경우 1902년의 헌법 개정 이후로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표방이 금지되었음.<sup>28)</sup>
- 다음은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당 표방이 금지되는 근거가 되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조 제6항의 내용임.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조 제6항

(a) 주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사법적, 학교, 카운티, 시의 공직자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b) 정당이나 정당의 중앙위원회는 비당파적 공직에 후보자를 공천하여서는 안 되며,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이처럼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않음으로서 정당이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들의 성향 및 특정 정당에의 소속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님.
  - 주의 법률이 교육감 후보들의 정당표방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의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소속 정당과 성향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sup>29)</sup>

25) [http://ballotpedia.org/Superintendent\\_of\\_Schools](http://ballotpedia.org/Superintendent_of_Schools) (검색일: 2014. 7. 26)

26) North Dakota Secretary of State. "Qualifications and Terms of Office for all Elected Positions in North Dakota" (<https://vip.sos.nd.gov/pdfs/Portals/qual-terms-elec.pdf>, 검색일: 2014. 7. 26).

27) <https://wei.sos.wa.gov/county/asotin/en/Elections/CandidateInfo/Pages/nonpartisanoffices.aspx> (검색일: 2014. 7. 26)

28) "... At the head of the department is the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who is a constitutional officer elected by the people for a four-year term on a non-partisan basis, according to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02." Wisconsin Blue Book. 1940. p.241.

29) 최영출. 201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감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 현재 한국의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이들의 성향을 보수·진보로 구분하여 투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 교육위원회 선출방식

- 현재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총 23개주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함.<sup>30)</sup>
-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거나<sup>31)</sup>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됨<sup>32)</sup>. 다음의 주들은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교육위원을 임명함.
  -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11인의 위원 중 8인이 선출되며, 나머지 3인은 주지사가 임명함.
  - 미시시피주의 경우 주지사가 5인을 임명하고, 주의회가 4인을 임명함.
  - 뉴욕주의 경우 주의회에서 임명함.
  - 오하이오주의 경우 11인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8인은 주지사가 임명함.

30)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Models."

31) 알래스카, 코네티컷, 하와이, 켄터키, 미주리,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주지사가 주 상원이나 하원, 혹은 주 의회 전체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함. 반면, 아칸소,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오리건 주 등에서는 주지사가 단독으로 교육위원을 임명함.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ate-by-State Chart of Essential Governance Information."

32) 앨라배마, 콜로라도, 캔자스,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ate-by-State Chart of Essential Governance Information."

-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의 경우 교육위원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선거 이후 교육감 임명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볼 때, 교육위원 전체 의석의 과반 혹은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보임.
- 주지사가 전체 교육위원 혹은 과반의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주의 경우 주지사 선거 결과가 교육감 임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sup>33)</sup>

### (3) 주지사 임명방식

-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15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함.
- 컬럼비아 특별구의 경우 워싱턴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함.<sup>34)</sup>
- 이 가운데 네바다, 버몬트, 와이오밍 3개 주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3인의 후보 가운데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뉴햄프셔 주에서는 주지사가 교육위원회의 자문과 주 집행위원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함.<sup>35)</sup>

33)

<http://www.governing.com/topics/politics/gov-how-elections-effect-state-school-superintendent-seats-2014.html> (검색일: 2014. 7. 30)

34)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Models."

35)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ate-by-State Chart of Essential Governance Information."

- 델라웨어,<sup>36)</sup> 아이오와,<sup>37)</sup> 미네소타,<sup>38)</sup> 뉴저지,<sup>39)</sup> 뉴멕시코,<sup>40)</sup> 펜실베이니아,<sup>41)</sup> 사우스다코타,<sup>42)</sup> 텍사스<sup>43)</sup> 등의 주의 법률은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때 주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버지니아 주의 경우 주지사가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sup>44)</sup>
- 메인주의 경우, 주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할 때 주교육위원회 의장의 자문을 구해야 하며,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후보자와 면접을 진행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이후 주지사는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함.<sup>45)</sup>
-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가 단독으로 주교육감을 임명함.<sup>46)</sup>

36) [http://ballotpedia.org/Delaware\\_Secretary\\_of\\_Education](http://ballotpedia.org/Delaware_Secretary_of_Education) (검색일: 2014. 7. 29)

37) [http://ballotpedia.org/Iowa\\_Department\\_of\\_Education\\_Director](http://ballotpedia.org/Iowa_Department_of_Education_Director) (검색일: 2014. 7. 29)

38) Minnesota Statutes 15.06 Appointment of Department Heads; Terms; Deputies.

39) [http://ballotpedia.org/New\\_Jersey\\_Commissioner\\_of\\_Education](http://ballotpedia.org/New_Jersey_Commissioner_of_Education) (검색일: 2014. 7. 29)

40) [http://ballotpedia.org/New\\_Mexico\\_Secretary\\_of\\_Education](http://ballotpedia.org/New_Mexico_Secretary_of_Education) (검색일: 2014. 7. 29)

41) [http://ballotpedia.org/Pennsylvania\\_Secretary\\_of\\_Education](http://ballotpedia.org/Pennsylvania_Secretary_of_Education) (검색일: 2014. 7. 29)

42) 사우스다코타 주 헌법 제4조 제9항.

43) 텍사스 교육법 제2조 제7장 제51항.

44) Code of Virginia 22.1-21. Appointment and Qualification.

45) Maine Revised Statutes 20-1-3.

46) Tennessee Code 4-3-802-(c).

#### 4. 미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 1910년 이후 미국의 주별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음.<sup>47)</sup>

임명방식	1900	1910	1930	1950	1973	1983	1992	2008	2014
교육 위원회	3 (7%)	4 (9%)	8 (17%)	13 (27%)	23 (46%)	27 (54%)	26 (52%)	24 (48%)	23 (46%)
주지사	7 (15%)	7 (15%)	7 (14%)	6 (13%)	5 (10%)	5 (10%)	9 (10%)	12 (24%)	15 (30%)
선거	31 (69%)	33 (72%)	33 (69%)	29 (60%)	22 (44%)	18 (36%)	15 (36%)	14 (28%)	12 (24%)
기타	4 (9%)	2 (4%)							
합계	45	46	48	48	50	50	50	50	50

#### 5. 미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특징과 평가

- 미국은 주에 따라 다양한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각 주들이 관련 제도를 변화시킨 경우가 많음.
- 1900년 이후, 특히 1950년대 이래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 주지사가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47) 1900년부터 1992년까지 데이터는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참조. 2008년 데이터는 최영출. 201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감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참조. 2014년 현재 선출방식의 분포는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3. "State Education Governance Models" 참조. 컬럼비아 특별구 교육감은 워싱턴 시장이 임명.

- 교육위원회 혹은 주지사가 연계하여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을 따르는 주의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일관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 주정부 수준에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나의 주체를 통해 조정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 다른 한편으로는 각 주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분산시키고 주정부 차원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교구 및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허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sup>48)</sup>
  - 이처럼 두 가지 정책적 목표는 언제나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혹은 자율성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화는 미국 교육행정 시스템 변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인 미국 교육의 질적 저하 및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1980년대까지 교육정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역할을 해왔던 주지사 등 주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48)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주 교육개혁은 주로 학력평가 혹은 자격증 수여 기준 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개혁은 주안의 각 교구를 포괄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주정부 차원의 규제를 설정하는 등 교육 행정을 보다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sup>49)</sup>
-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지사에게 의해 임명되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사이의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하며, 주지사가 교육위원회 위원들 및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주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행정 시스템의 변화가 주지사 등 주의 정부 수반에게 더 많은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sup>50)</sup>
  -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미국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정책적 목표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된 이후에 이에 적합한 교육행정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교육감 선출 방식 자체를 논하기 이전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육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9)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50) McCarthy, Martha, Carol Langdon, and Jeannette Olson. 1993. *State Education Governance Structures*. Denver: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영국 연구관 : 윤성원

## 1. 영국의 교육제도

### (1)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 지방교육행정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위 지자체(Local Authority, L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단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없음.
- 비교적 최근까지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담당기관을 일컫는 용어로 지역교육국(Local Education Authority, LEA)이 지자체(LA)와 혼재되어 쓰였으나 현재 대부분 공식문서에는 LEA 대신 LA가 쓰이고 있음.<sup>51)</sup>
- 이와 관련, 「교육조사법 200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에서 하나의 지자체가 지역교육국 또는 지역아동지원국 등으로 혼재·인식되는 상황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이에 따라 2009년 1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각 지자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온 LEA의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존속하지 않게 됨.<sup>52)</sup>

51) *School Autonomy in England* (Nait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September 2007), p. 3.

52) <http://www.ons.gov.uk/ons/guide-method/geography/beginner-s-guide/other/local-education-authorities/index.html> (검색일: 16 July 2014).

- 영국의 각 교육주체간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지자체(LA)의 교육장(또는 교육위원회 의장)과 학교협의체의 장이 한국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상적 학교행정 및 학교예산편성에 있어 지역교육국(LEA) 혹은 지자체(LA)의 기능 및 역할은 지속적, 전반적으로 크게 축소됨. 그러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일원화되어 있는 교육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까지 제약을 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 교육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강화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영국사회에서 교육 자치 및 자율권, 교육행정의 관료화 탈피 등과 같은 담론이 지닌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음. 지난 2012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일선 학교 담당자들은 교육 자치권의 정도가 1975년 수준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53)</sup>
-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캐머런 정부하 출범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sup>54)</sup>는 최근 수년 간 일선 학교들의 수준 증진을 명목으로 중앙집권화된 방식의 제도가 이뤄져왔으며, 단위학교 운영상의 명백한 실패가 드러나지 않는 한 중앙정부가 교육행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함.<sup>55)</sup>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지방의회(교육위원회), 지자체(LA), 학교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53) *Has schoo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changed 40 years on?* (Guardian: 13 November 2012).

54) 캐머런 보수당 정부는 브라운 노동당 정부(2007-2010)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를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로 개칭함.

55) *The Importance of Teaching: The Schools White Paper 2010* (Department for Education: November 2010), p. 13.

- 지방의회가 집행기구로서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 단위학교 혹은 단위학교들의 협의체가 통상적 행정 및 예산편성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음.
- 현재 단위학교들은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교원을 자체 고용하고 지대와 건물 등도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음. 해당 학교들은 지자체(LA)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단위학교의 업무 개입에 대한 엄격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sup>56)</sup>
- 「교육법 2011 (Education Act 2011)」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자체(LA)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킴 (s.45).
  - 예를 들어 학부모가 단위학교의 운영 전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학부모는 지자체 혹은 교육부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체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에 불만족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닌 교육부 혹은 교육부와 독립된 중앙부처인 Education Funding Agency(EFA),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등에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음.<sup>57)</sup>
  - 아울러 셰필드, 브리스톨 등 총 7개 지역에서는 기존에 지자체가 운영해 온 지방정부 옴부즈맨 서비스(LGO school complaints service)를 폐지함.
- 최근 각 지역 단위학교들의 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정·협의기관으로 학교협의체(Schools Forum)가 부상하고 있음.

56) *The role of the local authority* (The Essex County Council: 31 August 2011).

57) <https://www.gov.uk/complain-about-school> (검색일: 23 July 2014).

- 동 협의체는 각 지역 지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으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됨.<sup>58)</sup>
- 학교협의체는 각 단위학교 교장과 운영이사회, 교원단체, 학습기술원 (the Learning Skills Council), 영국 국교회 및 로마가톨릭 지역 교구, 각 지자체 대표 등으로 구성됨.
- 각 지역의 단위학교 운영 및 예산, 재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 협의체로 법적 기관(statutory body)임. 동 협의체의 설립·존속의 법적 근거는 「학교협의체 시행규칙 2012 (Schools Forums (England) Regulations 2012)」에 의함 (S.I. 2012/2261).
- 동 협의체의 개최 시기 및 횟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연 4~5회 정도 개최되며 필요시 추가로 열릴 수 있음.<sup>59)</sup> 학교협의체의 규모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 당국은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전체를 각기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포함하되, 통제가 가능한 범위의 ‘합리적(reasonable)’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예를 들어, 브리스톨 학교협의체의 경우 2014년 6월 1일 현재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책별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중등학교 교장 3인 및 운영회 이사 3인, 초등학교 교사 6인 및 운영회 이사 6인, 특수학교 교장 1인 및 운영회 이사 1인, 유아학교 교장 1인 및 운영회 이사 1인, 위탁학생 교육기관의 장 1인, 미취학 아동 대상 사설학교 교장 1인, 브리스톨 교육위원회 교구 1인, 클리프톤 교육위원회 교구 1인, 전문교육협회 1인, 교육실무지원자 1인, 16~18세 교육기관 대표 1인.<sup>60)</sup>

58) *What the forum does* (Bristol City Council: 1 June 2014).

59) 학교협의체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 협의체는 연간 최소 4회 이상 열려야 함.

60) *What the forum does* (Bristol City Council: 1 June 2014).

(3) 영국 학교협의체장의 권한과 범위

- 학교협의체의 실질적 역할 및 권한 증대와 더불어 단위학교 운영 및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협의체의 장(chair of a Schools Forum) 또는 협의체와 지자체(LA) 간의 역할분담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임.
- 우선 학교협의체 협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됨.
  - 해당 지자체 교육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장(長)<sup>61)</sup>, 해당 지자체 재정위원회의 장, 재정적 또는 기술적 조언을 위해 협의체로부터 초청된 자, 협의내용 관련 발표를 위해 협의체로부터 초청된 자 등. 그러나 발표자로 협의체에 초청된 LA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발표 관련 이외의 내용에 대한 발언은 제한됨.<sup>62)</sup>
- 따라서 협의체의 장과 지자체(LA) 간의 협력관계는 교육 자치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됨.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협의체 의장 및 부의장과 해당 지자체의 교육담당 고위 관료들이 학교협의체 개최 전 따로 모임을 갖고 논의될 의제 등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학교협의체의 장은 단위학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대표해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있음.<sup>63)</sup>

61) 한국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영국 내 직책을 지칭하는 명칭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의회 중 교육위원회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장을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Chief Education Officer 또는 Director of Education)으로 통칭함. 실제 영국 지자체마다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며, 교육위원회를 일컫는 명칭 역시 Education Department 혹은 Children Department 등으로 지역마다 다름. 영국 교육부는 최근 발간한 공식문서에서 해당 직책의 명칭을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or their representative 등으로 지칭한 바 있음.

62) *Schools Forums: Operational and Good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Education: September 2012), p. 15.

63) *Schools Forums: Operational and Good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Education: September 2012), p. 19.

- 학교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담당함.<sup>64)</sup>
  - 단위학교 예산 편성구조 변경: 재정조달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지자체(LA)가 담당함. 다만 사안에 따라 지자체(LA)가 최종 결정 권한을 협의체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학교 급식과 같이 단위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계약변경 또는 계약
  - 특수교육 및 학생위탁교육 등에 대한 협의
- 학교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담당함.
  - 학교보조금(Dedicated Schools Grant: DSG)의 중앙통제 비율
  - 전년도 비용지출상의 결손금액에 대한 이월사안
  - 재정운용계획 변경
- 학교협의체와 지자체, 교육부의 기능별 역할·권한 및 범위는 <표 1>을 참조.

---

64) *Schools Forum: A guide for schools and academies on its role and their responsibilities* (Department for Education: June 2013), p. 2.

<표 1> 2014-15학년도 학교협의체의 기능별 권한<sup>65)</sup>

기능	지자체(LA)	학교협의체 (Schools Forum)	교육부(DfE)
재원 포물러 (재)배분	제안 및 결정	협의 및 이사회 통보	없음
각종 주요 계약	입찰 최소 한 달 전 제안	견해 표명 및 이 사회 통보	없음
특수교육기관 및 위탁 교육기관 협의, 중앙정 부 보조금 할당	자문	견해표명 및 이사회 통보	없음
최소 재정보증(MFG)	MFG 제외건 제안	견해 표명	승인
무료급식, 보험, 면허, 직원비용, 도서관 및 박 물관 운용 등에 관한 역(逆)위임	제안	협의체 내 초·중등 학교 대표가 결정	학교협의체와 LA 간 의견 불일치 부문 판정
학교육성펀드, 인구급증 예상 지역 대상 학교 등에 대한 재정 배분	제안	결정	학교협의체와 LA 간 의견 불일치 부문 판정
입학, 학교협의체 사업, 세입에 따른 자본지출 등에 대한 주요 비용	제안	결정	학교협의체와 LA 간 의견 불일치 부문 판정
재정운용방식 변경	제안 및 단위학교의 장, 이사회 등과 협의	승인	학교협의체와 LA 간 의견 불일치 부문 판정
구성원 임기	결정	결정권 없으나 의견 표명 가능	없음
구성원 투표·선출	없음	선거 전과정 결정	없음
의장	지원	선거	없음

65) *Schools Forums: Operational and Good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Education: October 2013), pp. 6-8.

## 2. 영국의 교육감 및 학교협의체장 선출방식

### (1) 교육감 및 학교협의체의 장 자격요건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임명, 선임하는 방식으로 20세기 전반까지는 주로 명망 있는 성직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됐으나, 최근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전문가나 관료 중에서 임용되고 있음.<sup>66)</sup>
- 학교협의체의 경우 협의체 의장 선출을 위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학교협의체 시행규칙에 따르며, 협의체 의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후보자가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따라서 단위 학교 교장, 형태별 단위학교를 대표하는 장, 학교 운영위원회 이사 등이어야 함.<sup>67)</sup>

### (2) 교육감 선출방식

- 단위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협의체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교육사무국을 두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함.
- 참고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소지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의해 임명됨.
  - 교육위원 1/2은 지방의회 총회에서 정당안배로 선출되며, 나머지 절반은 호선위원으로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

---

66) 정환규,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년 9월 19일).

67) 학교협의체 운영방식 및 의장 선출방식 질의에 대한 영국 브리스톨 교육센터 학교협의체의 공식답변 (29 July 2014).

되는 것으로 알려짐. 또 교육위원회 구성시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도 포함되어야 함.<sup>68)</sup>

#### 나. 학교협의체의 장 선출방식

- 학교협의체의 경우 각 단위학교의 장 또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인원, 학교 운영위원회 이사, 그 밖의 특수학교 등을 대표하는 인원들로 구성됨.
  - 구성원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 학교 전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한 그룹에 대한 편견적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됨.<sup>69)</sup> 더불어 학교협의체 구성원들은 이타성, 진실성, 객관성, 책임성, 투명성 및 정직과 리더십에 기반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음.<sup>70)</sup>
- 학교협의체 의장은 매년 입학연도(academic year) 시작 후 열리는 첫 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협의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의장직에 도전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비밀투표가 진행됨.
  - 다만 ‘전국교장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와 같은 단체가 대부분 지역에서 교육행정상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단체가 학교협의체 의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해당 범주 외의 단체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됨.

68) 권동택·최봉섭, ‘영국 교육감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p. 31-32.

69) *Schools Forums: Operational and Good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Education: September 2012), p. 5.

70) *Bristol Schools Forum Constitution* (Adoped at Forum Meeting: 25 September 2012; Revised 16 July 2013).

- 학교협의체 의장의 임기와 관련, 협의체 의사규칙은 따로 고정임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부는 의장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할 경우 협의체 운영상 의장으로서의 임기와 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임기가 불합치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함.
- 의장 선출방법 혹은 투표방식에 대한 일관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각 지자체가 협의체와의 토론을 거쳐 투표방식을 확정할 수 있음.
  - 또 각 지자체는 학교협의체 선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협의체에 의한 선거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 중에 지명할 수 있음.
- 지역별 선거방식 및 절차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교육부는 각 지자체(LA) 및 학교협의체에 투표가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sup>71)</sup>
  - 선거 입후보 희망자 등록 절차
  - 각 지역 선거구에 해당 선거 실시 고지
  - 투표용지의 배송 및 수령
  - 개표 및 투표결과 고지
  - 단독입후보와 같은 특수상황 발생시 규정마련 및 현직 구성원의 재선 가능 여부
- 학교협의체의 투표 결과 2인 혹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동률을 기록했을 경우, 지자체(LA)는 각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 협의체를 대표하는 각 단위학교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음.

71) *Schools Forums: Operational and Good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Education: September 2012), pp. 6-7.

- 학교협의체 전체 구성원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非)학교 구성원들을 할당할 수 있음 (지자체 소속 참관자 및 협의관련 초청자 제외). 이 과정에서 지자체(LA)는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 영국성공회 또는 가톨릭 교구가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함. 또 해당 지역 내 각기 다른 종교를 지향하는 학교(Academies)가 있을 경우 협의체는 이들 역시 대표할 의무를 지님.
- 학교협의체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최소 정족수(재적인원의 40% 이상 참석, 참관인 제외)를 요구하고 있음. 최소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협의체 진행 자체가 불가능 것은 아니지만 동 협의체는 합법적·유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음.

### 3. 영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특징과 평가

- 영국의 지방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통합되어 있는 일원화된 구조인 만큼 중앙집권적 양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음.
- 지역교육국(LEA) 혹은 지자체(LA)의 영향력은 「교육개혁법 1988 (Education Reform Act 1988)」, 「교육법 2011 (Education Act 2011)」 제정 등으로 잇따라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와 단위학교 간의 주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큰 틀에서 현재의 영국의 교육행정은 ‘중앙정부-지자체-학교협의체’로 이뤄진 세 개의 주체가 협력 또는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때로는 상호견제에 따른 긴장관계도 형성됨.

- 지자체(LA) 차원의 교육감 임명 또는 학교협의체 차원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음.
- 다만 지자체(LA)의 권한이 상당부분 약화되어온 동인(動因) 자체가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영국 양당제의 경쟁구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 변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를테면 「교육개혁법 1988 (Education Reform Act 1988)」은 당시 보수당의 대처 정권이 노동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던 지역교육국(LEA)의 권한 약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달성을 위한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었음.<sup>72)</sup>
- 단위학교 대표 간의 모임인 학교협의체 역시 본격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의장 선출 방식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대라는 기본 방침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관할·지도하는 각 지역별 교육감 임명방식 및 학교협의체 의장 선출방식 역시 획일화된 구조가 아니라 현행대로 지역별로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지자체-학교협의체’라는 삼각구도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 지형적 측면에서는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뚜렷한 만큼 특정 정당의 지속적 영향력 아래 놓인 지방의회에 의해 교육행정의 중립성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협의 역시 병행될 수 있음.

72) 권동택·최봉섭, ‘영국 교육감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2012), p. 28.



프랑스 연구관 : 김청진

## 1. 프랑스의 교육 제도

### (1)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 가. 중앙정부와의 관계<sup>73)</sup>

- 1980년대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으로 중앙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졌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되었음.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도, département), 레지옹(지역, région)]은 각각의 관할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음.

권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 교과 내용 결정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학위 : 학위 발급 조건 및 수여	-	중앙정부	중앙정부
투자(건설, 재건축) 및 시설 운영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교과 운영 : 교육 기자재 구입	코뮌	중앙정부	중앙정부
교직원 관리 : 채용, 교육, 수당 등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행정, 기능, 보건직 관리 : 채용, 교육, 수당 등	중앙정부	중앙정부	레지옹
노무직 관리 : 채용, 교육, 수당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표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별 교육 권한><sup>74)</sup>

73)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 및 교육제도 /교육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상완. 2013. “지방분권 개혁과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 프랑스 사례 연구-” 『한국교육』 40권 4호를 참조할 것.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 프랑스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지방 교육을 관할하는 국가교육 행정구역(la 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de l'éducation nationale)으로서 '아카데미'(Académie)가 존재하며 각 아카데미의 수장으로서 교육감(recteur)이 있음.
- 레지옹 수준에 아카데미가 있다면<sup>75)</sup>, 데파르트망(도) 단위에서는 '도별 국가교육서비스국'(directions des services départementaux de l'éducation nationale)이 있고 '국가교육 아카데미 국장'(Directeurs académiques des services de l'éducation nationale, DA-SEN)이 수장임. <sup>76)</sup>

다. 교육감(recteur)의 권한과 범위

- 프랑스 교육감은 각 지역에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의 장관을 대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 교육 전반을 책임짐.
- 교육감은 각 지방에서 국가교육행정의 대표로서 국가 교육 정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국가교육지방 고유의 교육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규정과 규칙 제정을 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재정 감독자로서 교육 예산을 배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음.

74) 프랑스 교육부 사이트 - 교육 시스템 - 지방 정부 (참조 : 2014.7.6.)  
<http://www.education.gouv.fr/cid199/les-collectivites-territoriales.html>

75) 아카데미와 레지옹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레지옹 '론-알프스'(2개 아카데미), '일드프랑스'(3개 아카데미),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2개 아카데미)에는 복수의 아카데미가 존재

76) 프랑스 전역에 아카데미 30개(본토 26개, 해외 영토 4개) / 도별 국가 교육 서비스 국 97개

- 교육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초등교육 과정) 교사 및 일반 행정직에 대한 인사 관리권(<표.1> 참조), 중·고등학교장의 배치, 아카데미 조직 구성의 권한을 가짐.



<그림 1. 프랑스 아카데미(국가교육행정구역)>

- 대학 교수(professeur), 대학 메트르 드 콩페랑스(maître de conférences), ‘중·고등학교 교사, 교육, 진로 담당 교직원’(personnels enseignants, d’éducation et d’orientation)에 대한 채용 및 인사권은 중앙 정부

에게 있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사권만 교육감이 가짐.

- 2004년 제정된 「지방 자유 및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기술, 노무 및 서비스 직원(personnels techniques, ouvriers et de service)의 채용 및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됨.

## 2. 프랑스 교육감 선출방식

### (1) 교육감 선출 방식

- 프랑스 교육감은 내각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대통령 행정명령(décret)를 통해 임명됨
- 교육감에 대한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는 없음.

### (2) 교육감 자격 조건

-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박사 연구지도 자격증(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소유자이어야 하나,
  - 전체 교육감의 20% 안에서 1) 교육, 연구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박사 소유자 또는 2) 정부 부처 처장(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또는 정부 부처 국장(directeur d'administration)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 프랑스 교육감 현황은 아래와 같음

아카데미	성명	임명 시기	주요 경력
엑스-마르세이 (Aix-Marseille)	Ali Saïb(남)	13.7.24	대학교수(생물학)
아미앵(Amiens)	Bernard Beignier(남)	12.4.12	대학교수(법학 박사)
브장송(Besançon)	Éric Martin(남)	10.3.25	대학 교수(전자공학 박사)
보르도(Bordeaux)	Olivier Dugrip	13.7.25	대학교수(법학 박사) 툴루즈 아카데미 교육감
캉(Caen)	Christophe Prochasson (남)	13.7.24	대학교수 (역사학 박사)
클레르몽-페랑드 (Clermont-Ferrand)	Marie-Danièle Campion (여)	12.3.1	대학교수(약학, 법학박사) 루앙, 아미앵 아카데미 교육감
코스(Corse)	Michel Barat(남)	08.1.31	대학교수(철학 박사)
크레테이(Créteil)	Béatrice Gille(여)	14.5.7	교육부/고등 및 연구부 부처 처장 / 감사관
디종(Dijon)	Denis Rolland(남)	14.2.26	대학교수(역사학 박사)
그레노블(Grenoble)	Daniel Filâtre(남)	13.7.25	대학교수(사회학 박사) 툴루즈 2대학 총장
과달루프(Guadeloupe)	Stéphan Martens (남)	11.12.22	대학교수 (독어학 박사) 중등교사(역사, 지리, 독일어)
기욤(Guyane)	Philippe Lacombe(남)	14.2.27	대학교수 (사회학 박사)
릴(Lille)	Jean-Jacques Pollet (남)	12.9.28	대학교수 (독어학 박사) 낭시-메즈 아카데미 교육감
리모주(Limoges)	Luc Johann(남)	12.9.28	대학교수(전자물리학 박사)
리옹(Lyon)	Françoise Moulin-Civil (여)	12.9.28	대학교수 (문학 박사) 세르지퐁투아즈 대학 총장
마티니크(Martinique)	Catherine Bertho-Lavenir (여)	13.7.24	대학교수(역사학 박사) 파리 3대학 부총장
몽펠리에(Montpellier)	Armande	13.10.3	대학교수

	Le Pellec-Muller (남)		(체육교육, 스포츠기술학 박사) 스트라스부르 교육감
낭시·메츠 (Nancy-Metz)	Gilles Pécout (남)	14.6.4.	대학교수(역사학 박사)
낭트(Nantes)	William Marois (남)	13.1.3	대학교수(경제학 박사) 낭시-메츠, 크레테이, 보르도 아카데미 교육감
니스(Nice)	Claire Lovisi (여)	10.12.1	대학 교수(법학 박사) 디종, 오를레앙-투르, 스트라스부르그 교육감
파리(Paris)	François Weil(남)	12.7.19	대학교수(역사학 박사) EHESS 총장
프와티에(Poitiers)	Jacques Moret (남)	12.9.28	국립자연사박물관 교수 (생태, 식물학 박사)
렝스(Reims)	Philippe-Pierre Cabourdin (남)	11.4.14	회계감사원 주임 검사관
렌스(Rennes)	Michel Quéré (남)	13.1.3	대학교수 (경제학 및 도시공학 박사)
레유니옹(La Réunion)	Thierry Terret (남)	13.1.3	대학교수(스포츠 역사학)
루앙(Rouen)	Claudine Schmidt-Lainé(여)	13.1.3	대학교수(공학 박사)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Jacques-Pierre Gougeon (남)	13.1.3	대학 교수 (독어학 박사) 베를린 대사관 문화 참사관
툴루즈(Toulouse)	Hélène Bernard(여)	13.7.25	고등교육 및 연구부 처장 렌스 아카데미 사무처장
베르사유(Versailles)	Pierre-Yves Duwoye(남)	13.1.3	교육부 비서실장 고등교육 및 연구부 처장

<표2. 프랑스의 교육감 현황>77)

77) 출처 : 대학, 교육 전문 일간지 '레투디앙' (L'Étudiant) - 교육계 인물 데이터 베이스 'EducPros.fr'에서 검색  
<http://www.letudiant.fr/educpros/personnalites.html> (참조 : 2014.7.6.)

### 3. 프랑스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특징과 평가

- 프랑스에서 교육감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의회 동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각 아카데미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교육 정책을 집행하며 동시에 지방교육을 대표하는 자리임.
- 지방교육의 대표자로서 교육감은 지방 고유의 교육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특히, 1980년대 이후 프랑스가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교육감의 역할이 확대됨.
- 「2010년 7월 29일 행정명령」(Décret n°2010-889 du 29 juillet 2010)<sup>78)</sup>을 통해 교육감 임명 조건이 완화됨.
  -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박사 연구지도 자격증(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소유자이어야 하나, ‘정부부처 처장(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또는 ‘정부부처 국장(directeur d’administration)’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고위 공무원도 교육감에 임명될 수 있음. (교육, 연구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박사 소유자도 이전과 같이 교육감으로 임명될 수 있음)

78) Décret n°2010-889 du 29 juillet 2010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cidTexte=LEGITEXT000006071191&idArticle=LEGIARTI000006525969&dateTexte=&categorieLien=cid>

- 이러한 변화는 교육감의 역량으로서 행정적 전문성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임. 30명의 교육감 중에서 크레테이, 툴루즈 및 베르사유 아카데미 등 3명의 교육감은 HDR 자격증 혹은 박사 학위 미소지자로서 중앙 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고위 공무원 출신임.
- 프랑스에서 교육감의 임명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항상 제기되고 있음.
  - 1981년 사회당 미테랑 정권 수립 이후, 알랭 사바리 (Alain Savary) 교육부 장관은 8월 5일에 13명의 교육감을 한꺼번에 교체했고, 2007년 들어선 사르코지 정권은 12월에 14명의 교육감을 새롭게 임명했음.
  - 현 올랑드 사회당 정부에서는 30명 교육감 중 22명이 새롭게 임명되었음. (표2. 참조). 특히, 지난 2012년 9월 28일 뱅상 페이용 교육부 장관의 제안으로 교육감 6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일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감 임명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사회당 정부를 비판했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반발하여 마르틴 다우스트 (Martine Daoust) 포아티에 아카데미 교육감 및 마리-잔느 필립 릴 아카데미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감 임명이 발표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79)

---

79) Le Nouvel Observateur, 2012.9.28. "Education: six nominations controversées de recteurs en Conseil des ministres", (교육 : 내각 회의 6명 신규 교육감 임명에 관한 논란)  
<http://tempsreel.nouvelobs.com/education/20120928.AFP0441/education-six-nominations-controversées-de-recteurs-en-conseil-des-ministres.html>



독 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 1. 독일의 교육제도

### (1)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 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 독일의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 주(州)의 관할 사항으로, 해당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방에서는 학교제도와 관련한 감독적 사무를 수행함(「연방기본법 제7조제1항」).
  -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설립업무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짐(「연방기본법 제7조제4항」).
  - 사립학교 설립시에 인가는 연방정부에서 이루어지나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됨(「연방기본법 제7조제4항」).
- 공립학교제도에 대한 별도의 연방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독일의 교육제도는 지방정부 위임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방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항으로 주 경계를 넘어 초지역적인 의미를 갖는 대학 수준의 학술연구에 대해 각 주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연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와의 협약을 근거로 협력적인 업무 진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 기본법 제91b조제1항」).

- 주정부의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독일의 교육사무는 내부적 교육사무(Innere Schulangelegenheiten)와 외부적 교육사무(Äußere Schulangelegenheit)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각각 관할행정청이 달라짐.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운영자로서 외부적인 학교사무를 관장함.
  - 외부적 교육사무는 학교건물의 신축 및 관리유지, 교육기자재 및 학습자료(교과서 등)의 지원, 관리인력 등을 의미하며 학교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음.
- 독일 각급 정부(주정부/ 하부 지자체)의 교육행정청(학교감독청)에서 내부적 교육사무를 관할함.
  - 내부적 교육사무는 교육 및 훈육에 관한 사항, 교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것임.

#### 나. 일반행정과의 관계

- 독일의 경우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하고 있지 않음.
  - 각 주정부의 책임으로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특별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는 없음.
- 또한 각 주마다 교육행정조직 및 운영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대표적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경우 주를 구성하는 150개의 자치단체(Gemeinde)가 학교 시스템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경우 주정부 교육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기본법」

**제7조 (학교제도, 종교제도)**

제1항 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중간 생략)

제4항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한다. 공립학교 대응인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가 필요하고 주 법률에 종속함을 요한다. 사립학교의 교육목적과 그 설비 및 그 교사의학문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뒤떨어짐이 없고 학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지 않는 한 인가는 주어져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5항 사립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학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교육권자들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단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 특정 교단이 설립한 학교 또는 세계관 학교로서 이러한 성격의 공립 초등학교가 자치단체 내에 없는 경우에만 그 설립이 인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91b조(교육계획 및 연구에 관한 연방과 주의 협력)**

제1항 연방과 각주는 초지역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 협약을 근거로 하여 다음 사항의 지원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

1. 대학 이외에 학술연구기관의 시설과 계획
2. 대학 내 학술연구계획
3. 대형기계를 비롯한 대학 내 연구건축물

제1문제2호에 따른 협약은 모든 주의 동의를 요한다.

제2항 연방과 각 주는 협약을 근거로 하여 국제적 비교에 있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

고나 권고시에 교육제도의 이행능력의 확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제3항 비용 분담은 협약으로 정한다.

**Art. 7** (1) Das gesamte Schulwesen steht unter der Aufsicht des Staates.

(중간 생략)

(4) Das Recht zur Errichtung von privaten Schulen wird gewährleistet. Private Schulen als Ersatz für öffentliche Schul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s Staates und unterstehen den Landesgesetzen. Die Genehmigung ist zu erteilen, wenn die privaten Schulen in ihren Lehrzielen und Einrichtungen sowie in der wissenschaftlichen Ausbildung ihrer Lehrkräfte nicht hinter den öffentlichen Schulen zurückstehen und eine Sonderung der Schüler nach den Besitzverhältnissen der Eltern nicht gefördert wird. Die Genehmigung ist zu versagen, wenn die wirtschaftliche und rechtliche Stellung der Lehrkräfte nicht genügend gesichert ist.

(5) Eine private Volksschule ist nur zuzulassen, wenn die Unterrichtsverwaltung ein besonderes pädagogisches Interesse anerkennt oder, auf Antrag von Erziehungsberechtigten, wenn sie als Gemeinschaftsschule, als Bekenntnis- oder Weltanschauungsschule errichtet werden soll und eine öffentliche Volksschule dieser Art. in der Gemeinde nicht besteht.

(이하 생략)

**Art. 91b** (1) Bund und Länder können auf Grund von Vereinbarungen auf Grund von Vereinbarungen in Fällen von überregionaler Bedeutung zusammenwirken bei der Förderung von:

1. Einrichtungen und Vorhaben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außerhalb von Hochschulen;
2. Vorhaben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an Hochschulen;
3. Forschungsbauten an Hochschulen einschließlich Großgeräten.

Vereinbarungen nach Satz 1 Nr. 2 bedürfen der Zustimmung aller Länder.

(2) Bund und Länder können auf Grund von Vereinbarungen zur Feststellung der Leistungsfähigkeit des Bildungswesens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und bei diesbezüglichen Berichten und Empfehlungen zusammenwirken.

(3) Die Kostentragung wird in der Vereinbarung geregelt.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 독일의 경우 주단위의 자치적 성격이 강하여, 주정부마다 행정체계의 조직 및 구성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대체로 주정부의 교육부, 관구교육청, 시군단위의 교육청이 있으며, 주교육부장관, 관구교육청장, 시군교육청장으로 구성됨.
- 참고로 연방정부의 교육담당 부서는 ‘연방교육 및 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로서 현 장관은 요한나 반카(Johanna Wanka)임.
  - 현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 산하 부서에는 연방과 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협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대학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
- 주단위의 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각 주의 학교법(Schulgesetz)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 명칭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교육 담당부처(예: 교육부, 교육문화부, 교육청소년부, 학문부 등)가 주단위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운영자(Schulträger)로서 외부적인 학교사무를 관장함.
-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개교나 폐교와 같이 개별 학교의 조직에 관련된 조치 그리고 학교의 운영비와 조직과 관리 등의 비용 충당에 관한 권한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와 실업학교(Hauptschule), 상업학교(Realschule), 김나지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크라이스와 독립시는 직업학교, 직

업전문학교, 직업고등학교, 전문학교, 그 밖의 특수직업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 크라이스, 독립시가 학교의 90% 이상을 설치·운영하며, 주(州)정부는 기숙사가 딸린 김나지움, 실업학교, 교육적 특수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결기관은 지방의회(Gemeinderat)이며, 지방의회의 어떤 상임위원회가 교육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칼스루에에서는 총무위원회(Hauptausschuss)가,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행정위원회(Verwaltungsausschuss)가, 튀빙겐에서는 문화, 학교, 스포츠위원회가 교육 문제를 심의·의결하고 있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주헌법에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치하고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NRW 주헌법 제8조제3항」).
  - 이에 근거해 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법에 의하면 주의 교육감독청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NRW주 학교법 제88조」).
  - 주정부 소속의 ‘학교 및 계속교육부(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가 최상급 교육감독청이며, ‘학교 및 계속교육부장관’은 모든 학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주에 있어서 통일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음.
  - 고등학교 감독청은 관구행정청(Bezirksregierung) 소속의 교육부가 담당하게 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는 5개의 관구행정청이 있어 5개의 고등학교 감독청이 존재하며, 관구행정청의 장은 모든 종류의 학교를 관장함.
  - 하위 감독청은 크라이스(군청)와 시의 교육청(Schulamt)이 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는 54개의 교육청이 있으며, 초등학교, 실업학교, 특수학교를 관장함.
  - 하위 감독청은 교육전문직 공무원과 행정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혼합행정청으로, 이들 직원은 시장이나 군수에 의하여 임명됨.
  - 간부인 학교감독관은 주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비하여 행정전문관(Verwaltung-sfachmann)은 시장이나 군수에 의하여 임명됨.
  - 학교감독청은 학교에 대한 전문감독(Fachaufsicht)과 직무감독(dienstaufsicht)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감독에 속하는 것으로는 학교의 교육과 훈육에 대한 지원, 학교 교육의 질적 보장과 발전, 수업의 통제, 교과과정이나 지시의 집행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의 상담, 교사복지의 동등성 보장, 계속교육의 조직, 학교 운영자에 대한 조언 등이 이에 속함.
  - 직무감독에 속하는 것으로는 교사의 채용과 선서, 전근과 파견, 직무근평, 출장의 허가, 직무상 고충처리 등을 들 수 있음.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 주정부의 교육관련 부처는 교육학문문화부로서 구성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어 4개의 국으로 구성됨.
- 총무국
  - 학교성인교육국
  - 학문연구대학국
  - 문화국

-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경우 주의 지방교육행정청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최고 교육행정청은 주지사가 됨.
  - 주지사 소속하에 교육청소년스포츠부(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장관이 교육사무를 총괄함.
  - 문화청소년스포츠부의 하급기관으로는 관구행정청(Bezirksregierung) 단위로 관구행정청장(Regierungspräsident) 소속 부서가 학교와 교육을 담당하며 학교감독 기능을 수행함.
  - 관구행정청장은 주정부의 행정 하급지방행정청으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며 학교에 대한 고등감독청이 되며, 바덴-뷔템베르크의 경우 관구는 프라이부르크, 칼스루에, 스투트가르트, 튀빙겐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4개의 고등지방교육청이 존재하는 셈임.
  - 하급학교감독청으로는 관구별로 지방자치단체인 크라이스(군청)이나 독립시의 교육감독청이 있는데, 이들은 하급교육행정청은 국가사무로 학교감독사무를 수행함.

「NRW주 헌법」

제8조

(중간 생략)

제3항 주(州)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치하고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학교는 독일의 감독 하에 있다. 학교 감독은 전임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Artikel 8

(중간 생략)

(3) Land und Gemeinden haben die Pflicht, Schulen zu errichten und zu fördern. Das gesamte Schulwesen steht unter der Aufsicht des Landes. Die Schulaufsicht wird durch hauptamtlich tätige, fachlich vorgebildete Beamte ausgeübt.

「NRW주 학교법」

**제88조 학교감독관청**

제1항 최상위 학교감독기관은 주정부 (교육)부이다.(이하 생략)

제2항 상급 학교감독기관은 관구행정청(Bezirksregierung)이다.(이하 생략)

제3항 하위 학교감독기관은 시의 교육청이다,(이하 생략)

제4항 학교감독기관과 학교운영자는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그와 더불어 특히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88 Schulaufsichtsbehörden**

(1) Oberste Schulaufsichtsbehörde ist das Ministerium. Es nimmt für das Land die Schulaufsicht über das gesamte Schulwesen wahr und entscheidet über Angelegenheiten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Es sichert die landeseinheitlichen Grundlagen für die pädagogische und organisatorische Arbeit der Schulen und für ein leistungsfähiges Schulwesen.

(2) Obere Schulaufsichtsbehörde ist die Bezirksregierung. Sie nimmt in ihrem Gebiet die Schulaufsicht über die Schulen, die besonderen Einrichtungen sowie die Studienseminare nach dem Lehrerausbildungsgesetz wahr.

(3) Untere Schulaufsichtsbehörde ist das staatliche Schulamt. Es ist der kreisfreien Stadt oder dem Kreis zugeordnet. Es nimmt in seinem Gebiet die Schulaufsicht über die Grundschulen wahr und die Fachaufsicht über

1.die Hauptschulen,

2.die Förderschulen mit einem der Förderschwerpunkte Lernen, Sprache, emotionale und soziale Entwicklung, geistige Entwicklung sowie körperliche und motorische Entwicklung mit Ausnahme der Förderschulen im Bildungsbereich der Realschule, des Gymnasiums und des Berufskollegs,

3.die Förderschulen im Verbund (§ 20 Abs. 5), sofern sie nicht im Bildungsbereich der Realschule, des Gymnasiums oder des Berufskollegs unterrichten oder einen der Förderschwerpunkte Hören und Kommunikation oder Sehen umfassen.

(4) Die Schulaufsichtsbehörden und die Schulträger sollen eng zusammenarbeiten und sich dabei insbesondere gegenseitig und rechtzeitig über Maßnahmen mit Auswirkungen auf den jeweils anderen Bereich informieren.

(3) 지방교육기관장의 권한과 범위

- 연방법률 차원에서 지방교육기관장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음.
- 각 주단위 법률에서 주 정부의 교육행정조직 및 기관장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학교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이며, 감독적 사무는 각급 학교감독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학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무는 NRW주의 경우 학교감독청은 학교에 대한 전문감독(Fachaufsicht)과 직무감독(Dienstaufsicht)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전문감독에 속하는 것으로는 학교의 교육과 훈육에 대한 지원, 학교교육의 질적 보장과 발전, 수업의 통제, 교과과정이나 지시의 집행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의 상담, 교사복지의 동등성 보장, 계속교육의 조직, 학교 운영자에 대한 조언 등이 이에 속함.
- 직무감독에 속하는 것으로는 교사의 채용과 선서, 전근과 파견, 직무근평, 출장의 허가, 직무상 고충처리 등을 들 수 있음.

2. 독일의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

(1)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임명방식

- 독일의 경우 주지사가 교육감독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방식임.
- 교육감독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전문감독업무를 위해 공무원의 자격

또는 교육심리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헤센 주, 베를린 등)는 있으나, 감독기관의 장에 대해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 학교법은 없음.

- 학교운영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가 되며, 교육사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교육문제와 관련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외부적 사무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부적 사무에 해당하는 학교감독 업무 등은 주단위 교육담당부처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 (2) 지방교육기관장 자격요건

- 독일에서는 학교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학교의 운영자(Schulträger)로서 외부적인 학교사무를 관장함.
- 학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독기관(Schulaufsichtsbehörde)은 NRW주를 비롯하여 바덴-뷔템베르크의 경우 주·관구·시(군) 단위의 3단계로 감독기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NRW주의 경우 시(군) 단위 하위 감독청의 경우 교육전문직 공무원과 행정전문직 공무원을 혼합하여 구성하며, 이들 직원은 시장이나 군수에 의하여 임명하고 있음.
- 또한 NRW주의 학교감독관은 주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비하여 행정전문관(Verwaltungsfachmann)은 시장이나 군수에 의하여 임명되고 있음.

### 3. 독일의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에 대한 특징과 평가

- 독일의 경우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이 있는 교육위원(선거인단 등) 구성방법에 대한 대립이나 선거 과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행정 기관으로 학교자문위원회(Schulbeirat)를 구성하여 학교의 조직, 시설, 학교의 신설 및 폐교, 교사의 신축 및 증축, 예산 등 모든 중요한 학교 관련 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제안을 함.
- 학교자문위원회는 시장, 군수 등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장이나 교사, 학교 대표, 종교단체의 대표, 보건소 대표, 직업학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관한 대표자가 포함됨.
- 헤센 주, 니더작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학교위원회(Schulkommission, Schulausschuß, Schulträgerausschuß)에서 교육문제를 심의하는데, 여기에는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도 참여하고 있음.
- 라인란트팔츠에서는 학생 대표도 학교위원회에 참여하고, 헤센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에는 학생 대표가 자문권(beratende Stimme)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 니더작센 주에서 학교위원회는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
-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과정 및 내용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므로 교육위원회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 독일의 경우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동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 교육감독기관장의 임명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음.
  - 대체로 교육감독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인사에 관련한 사항은 주정부의 교육담당부처에서 관할함.
  - 하위 교육감독기관의 인사는 시(군) 지자체의 장 또는 교육담당 부서의 관할에 속함.



일본

일본 연구관 : 신여림

## 1. 일본의 교육제도

### (1)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 가. 교육위원회 설치

-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설치되며, 지방공공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1948년부터 설치되어 지방공공단체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 교육 안정성의 확보, 교육 비전문가인 일반주민의 의견까지 교육제도에 반영한다는 설립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 나. 중앙정부와의 관계<sup>80)</sup>

- 일본의 교육행정기관은 중앙의 문부과학성과 지방의 교육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의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 중앙은 학교교육법 등의 관리와 재정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은 학교설치자로서의 역할, 아동 및 학생의 교육실시, 교원의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음.

80) 토다히로시「교육위원회는 재생 가능 한가 - 지방교육행정법개정을 앞두고」『입법과 조사』 No.348, 2014, p68, /[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4pdf/20140115067.pdf](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4pdf/20140115067.pdf)

- 참고로 지방교육은 이원제를 채택하여 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의회와의 관계에서 단체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므로 단체장의 영향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업무는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함.

다. 일반행정과의 관계

- 교육에 있어서 교육행정(교육위원회)과 일반행정(지방공공단체장)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만 완전 분리형은 아님.

기 관	역 할
교육위원회	학교교육에 관한 것: 공립학교의 설치 및 관리, 교직원의 인사 및 연수, 아동-학생의 입학과 퇴학, 학교의 조직구성, 교육과정, 학생지도, 교과서 채택, 학교 건물 등의 설비
	사회교육에 관한 것: 강좌, 집회의 개설 등 사회교육사업의 실시,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설비, 관리
	문화재보호에 관한 것
	학교에 있어서 체육에 관한 것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 지방수장에게 위임 가능한 것	문화에 관한 것: 문화사업의 실시, 문화시설의 관리
	스포츠에 관한 것: 스포츠사업의 실시, 스포츠시설의 관리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대학에 관한 것
	사립학교에 관한 것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
	계약의 체결
	예산의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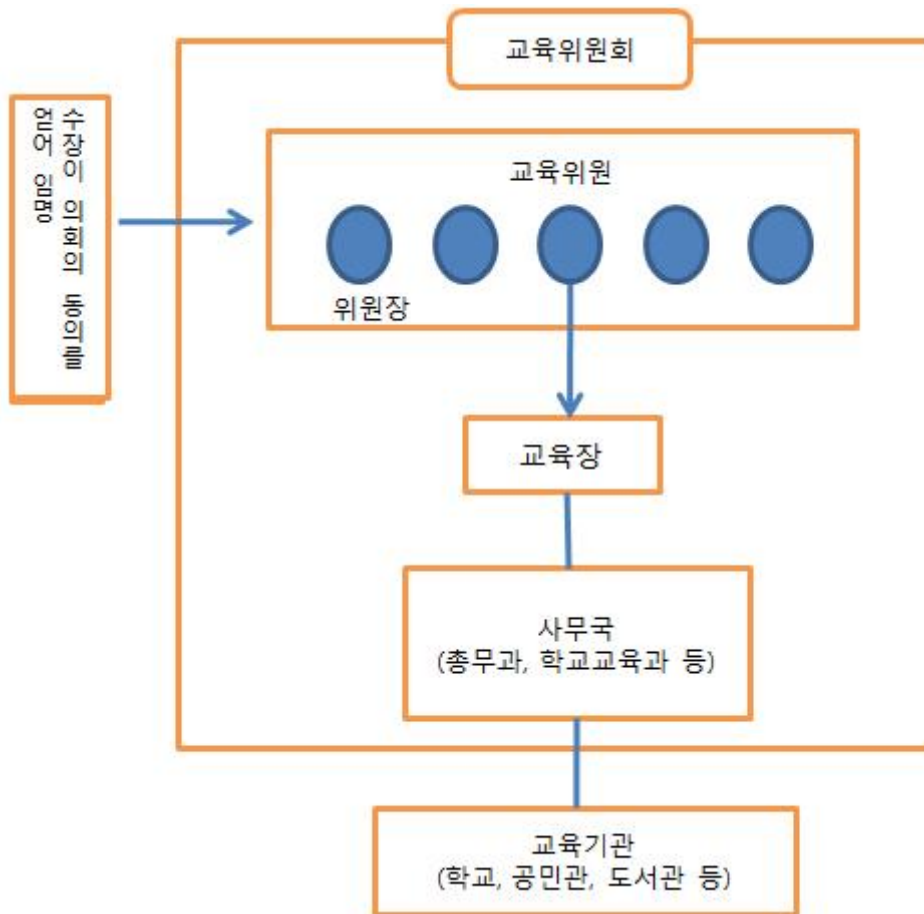
<표1. 일본 지방교육기관의 역할>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가. 교육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 지방공공단체장에 의해 선임된 교육위원 5명(조례에 따라 3~6명도 가능)으로 구성됨.
- 교육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을 선출(자체선출)함.
- 교육위원회의 대표는 위원장이며, 교육장은 상근근무로 그 밑에 사무국을 둠.

<그림 1 교육위원회의 조직도<sup>81)</sup>>



81)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chihou/05071301.htm](http://www.mext.go.jp/a_menu/chihou/05071301.htm) 참고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권한과 범위

가. 교육위원회의 권한

-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구 등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은 없으나, 교육에 관한 예산에 관해 지방공공단체장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음.

나.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장의 권한

-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대표로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짐.
-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모든 임무를 담당, 교육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해 의사에 대해 조언함.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 교육위원회는 해당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교육에 관한 사무에서, 다음에 개재하는 것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1.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제 30조에 규정하는 학교, 그 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 그 외의 교육기관이라고 한다)의 설치, 관리 및 폐지에 관한 것.
2. 학교 그 외의 교육기관의 필요를 제공하는 재산(이하 교육재산이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것
3. 교육위원회 및 학교 그 외 교육기관의 직원의 임명과 면직 그 외의 인사에 관한 것
4. 학생 및 아동의 취학 및 학생, 아동 및 유아의 입학, 전학 및 퇴학에 관한 것
5. 학교의 조직편제, 교육과정, 학습지도, 학생지도 및 직업지도에 관한 것
6. 교과서 그 외의 고재의 취급에 관한 것
7. 학교 건물 그 외 시설 및 교구 그 회의 설비의 정비에 관한 것

8. 학교, 교원, 그 외의 교육관계 직원의 연수에 관한 것
9. 학교 교원 그 외 교육관계 직원 및 학생, 아동 및 유아의 보건, 안전, 후생 및 복리에 관한 것
10. 학교 그 외 교육기관의 환경위생에 관한 것
11. 학교급식에 관한 것
12. 청소년 교육, 여성교육 및 공민관의 사업 그 외 사회교육에 관한 것
13. 스포츠에 관한 것
14.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것
1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것
16. 교육에 관한 법인에 관한 것
17. 교육에 관련한 조사 및 기간통계 그 외 통계에 관한 것
18. 소장 업무에 관련한 공보 및 소장업무에 관한 교육행정에 관하는 상담에 관한 것
19. 전 각 호에 개재하는 것 외,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

「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

(教育委員會の職務權限)

第二十三條 教育委員會は、当該地方公共団体が處理する教育に関する事務で、次に掲げるものを管理し、及び執行する。

- 一 教育委員會の所管に屬する第三十條に規定する學校その他の教育機關（以下「學校その他の教育機關」という。）の設置、管理及び廢止に關すること。
- 二 學校その他の教育機關の用に供する財産（以下「教育財産」という。）の管理に關すること。
- 三 教育委員會及び學校その他の教育機關の職員の任免その他の人事に關すること。
- 四 學齡生徒及び學齡兒童の就學並びに生徒、兒童及び幼兒の入學、轉學及び退學に關すること。
- 五 學校の組織編制、教育課程、學習指導、生徒指導及び職業指導に關すること。

- 六 教科書その他の教材の取扱いに關すること。
- 七 校舎その他の施設及び教具その他の設備の整備に關すること。
- 八 校長、教員その他の教育關係職員の研修に關すること。
- 九 校長、教員その他の教育關係職員並びに生徒、兒童及び幼兒の保健、安全、厚生及び福利に關すること。
- 十 學校その他の教育機關の環境衛生に關すること。
- 十一 學校給食に關すること。
- 十二 靑少年教育、女性教育及び公民館の事業その他社會教育に關すること。
- 十三 スポーツに關すること。
- 十四 文化財の保護に關すること。
- 十五 ユネスコ活動に關すること。
- 十六 教育に關する法人に關すること。
- 十七 教育に係る調査及び基幹統計その他の統計に關すること。
- 十八 所掌事務に係る廣報及び所掌事務に係る教育行政に關する相談に關すること。
- 十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地方公共団体の区域内における教育に關する事務に關すること。

제 29 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 중, 교육에 관한 사무에 관한 부분 그 외 특별히 교육에 관한 사무에 대해 정하는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건의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教育委員會の意見聴取)

第二十九條 地方公共団体の長は、歳入歳出予算のうち教育に關する事務に係る部分その他特に教育に關する事務について定める議會の議決を経るべき事件の議案を作成する場合においては、教育委員會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지위감독 하에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2.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해 의사에 대해 조언한다.

3. (생략)

「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

( 教育長の職務)

第十七條 教育長は、教育委員會の指揮監督の下に、教育委員會の権限に屬するすべての事務をつかさどる。

2 教育長は、教育委員會のすべての會議に出席し、議事について助言する。

3 (생략)

## 2. 일본의 교육감(교육장) 선출방식

- 일본은 지방공공단체장에 의해 선임된 교육위원 5명중에서(조례에 따라 3~6명도 가능)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음.
-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선발하고 있음.

### (1) 교육장 자격요건

- 교육장은 교육위원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교육장 자격요건은 교육위원과 같음.
-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 교육위원은 지방공공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또한 파산자로 복권하지 못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교육위원이 될 수 없음.

- 교육위원의 정수 중 2분의 1이상이 동일한 정당의 소속이면 안 됨.
- 2001년부터는 교육위원회의 선임에 있어서 직업, 성별, 연령에 편중이 없게 배려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위원은, 해당 지방공공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인격이 뛰어나고, 교육, 학술 및 문화(이하 교육이라고 함)에 관한 의견을 가진 자 중,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도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어떤 것이라도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위원의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자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

4.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위원의 연령, 성별, 직업 등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위원 중 보호자(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미성년자 후견인을 말함 제 27조의 5 제 2항에 있어서 동일)인 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

(任命)

第四條 委員は、当該地方公共団体の長の被選挙権を有する者で、人格が高潔で、教育、學術及び文化（以下單に「教育」という。）に關し識見を有するものうちから、地方公共団体の長が、議會の同意を得て、任命する。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委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破産者で復権を得ない者
- 二 禁錮以上の刑に處せられた者

3 委員の任命については、そのうち委員の定數の二分の一以上の者が同一の政党に所屬することとなつてはならない。

4 地方公共団体の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任命に当たっては、委員の年齢、性別、職業等に著しい偏りが生じないように配慮するとともに、委員のうちに保護者（親権を行う者及び未成年後見人をいう。第四十七條の五第二項において同じ。）である者が含ま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교육위원 및 교육장 공모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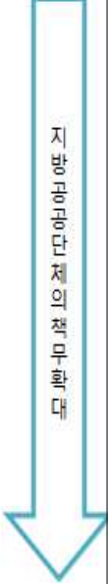
-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위원에 있어서 폭넓은 인재 기용을 위해 공모를 통해 교육위원 또는 교육장의 후보자를 선발함.
- 공모를 통해 복수 후보자를 선발한 후 지방공공단체장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됨. 최종 후보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됨.
- 2013년 3월 1일 현재 공모제를 시행하는 지방공공단체는 교육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오사카부, 도쿄도의 일부 구 및 시를 포함 28단체이며, 교육장의 선임에 있어서는 7단체임<sup>82)</sup>.

## (3) 교육감(교육장) 선출방식의 변화

- 일본은 1948년 교육위원 직선제를 실시하였으나, 교육위원회 당파대립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56년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위원 임명승인제로 전환하였음.
- 이후 지방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승인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하였음.

82)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chihou/1328894.htm](http://www.mext.go.jp/a_menu/chihou/1328894.htm)

<표2 지방교육기관장 선출제도의 주요 변화<sup>83)</sup>>

연 도	선출방식	주요 내용	비고	
1948년	교육위원회 직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의 지방 분권</li> <li>교육에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교육위원회 직선제 실시</li> </ul>	 주 체 적 지 방 교 육 행 정 의 추 진	 지 방 교 육 위 원 회 의 책 임 추 강
1956년	교육위원회 직선제 폐지  교육장 임명승인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위원회 내의 당파대립 위험 해소를 위해 직선제 폐지</li> <li>교육장 임명승인제도 도입 (국가 및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승인)</li> <li>일반행정과의 조화를 위해 교육위원회에 의한 예산안, 조례안의 의회제안권 폐지</li> </ul>		
1999년	교육장 임명승인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장 임명승인제도의 폐지 (지방의 책임에 의한 교육장 임명)</li> <li>시정촌의 공립학교에 관한 도도부현의 기준 설정 권한 폐지</li> </ul>		
2001년	임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위원 구성의 다양화; 연령, 성별, 직업 등 편중 없도록 규정</li> <li>교육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li> </ul>		
2004년	임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운영협의회 설치 가능: 지역 주민 보호자의 운영참가 (커뮤니티 스쿨)</li> <li>학교운영협의회의 권한: 운영의 기본 방침 승인, 운영에 관한 의견 제안, 교직원의 임명에 대한 교육위원회에 의견 전달</li> </ul>		
2007년	임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위원회의 책임제 명목화</li> <li>교육위원회의 체제 중심</li> <li>교육위원회에 있어서의 지방 분권 추진</li> <li>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 교육위원 회의 법령위반 및 태만에 대해 문부과학성의 지시 및 시정 요구 가능</li> <li>사립학교에 관한 학교행정: 도지사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관해 교육위원회에 대해 조언 및 원조를 요구할 수 있음.</li> </ul>		
2015년	임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위원회장의 폐지, 교육장이 대표</li> </ul>		

### 3. 일본의 교육감(교육장) 선출방식에 대한 특징과 평가

#### (1) 현행 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의 문제점<sup>84)</sup>

##### 가. 권한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

- 비상임 교육위원회의 대표인 교육위원장과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장의 관계가 불분명함.
- 시정촌 학교의 관리권한은 그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현비부담 교직원<sup>85)</sup>의 인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행하고, 예산 집행 등 재정 권한은 시정촌 단체장이 갖고 있어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분산된다는 지적임.

##### 나.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움

- 교육장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공공단체장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 어렵다는 평가임.
- 교육위원회 및 사무국 직원의 다수가 전 교육관계자로 폐쇄적이고 교육계의 입장에 빠져있다는 평가가 있음.

83) 총리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kyouikusaisei/dai3/siryou2.pdf> 문부과학성 제출자료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p.3

84) 총리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kyouikusaisei/dai3/siryou2.pdf> 문부과학성 제출자료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p.2

85) 현비부담교직원제도: 시정촌의 교직원은 시정촌의 직원이지만, 그 급여를 도도부현이 부담함으로써 일정수준의 급여 및 교직원을 확보. 이 경우 교직원의 임명 및 급여부담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담당. 인사에 있어서는, 학교의 교장이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교직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 교직원의 복무감시 등은 시정촌이 담당.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51/shiryo/08051905/001.pdf](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51/shiryo/08051905/001.pdf) 참고

다. 교육위원회 심의 등의 형식화

- 교육위원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사무국이 제출하는 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등 실질적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소규모 시정촌 위원회의 사무처리 능력 부족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라. 위기대응 능력의 한계

- 교육위원회는 월 1~2회 개최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2) 신교육장제도의 주요 내용<sup>86)</sup> (2015년 4월 1일 실시)

가. 교육행정 책임의 명확화

- 기존 교육위원회장과 교육장을 일원화한 (신)교육장을 교육위원회의 책임자 및 대표자로 함. 임기는 3년(지방공공단체장은 임기내 최소 1회 교육장을 임명하게 됨).
-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임명함.
- 교육위원회는 교육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위임된 사무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나. 종합교육회의 설치

- 지방공공단체장이 소집하고, 교육위원회로 구성되는 종합교육회의를 설치함.

86) 문부과학성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개요  
[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_icsFiles/afieldfile/2014/04/04/1346352\\_01.pdf](http://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_icsFiles/afieldfile/2014/04/04/1346352_01.pdf)

- 이 회의에서 교육행정 방침의 대강(大綱) 책정, 교육조건 정비, 중점 시책, 긴급상황시의 조치 및 협의 등이 다루어짐.
-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종래의 집행 권한을 유지함(교과서 채택, 교직원의 인사권은 교육위원회의 전권으로 남겨짐).

#### 다. 국가의 관여에 관한 검토

- 집단 따돌림에 의한 자살 방지, 아동 및 학생의 생명 및 신체의 피해가 확대 또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문부과 학생 대신이 교육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검토를 실시함.

### (3) 신교육장제도에 대한 의견

#### 가. 지방공공단체장의 권한 강화<sup>87)</sup>

-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것이나 지방공공단체장 및 교육장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사실상 정치적 독립성, 안정성 및 계속성의 저하가 우려됨.
- 지방공공단체장이 소집하는 종합교육회의 및 회의가 정하는 교육 대강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음. 이에 대해서 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임(오사카부 교육행정기본조례는 지사가 작성한 기본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

---

87) 무라카미 유스케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안의 과제와 논점」, 일본교육행정학회 연구집회(2014.5.11)자료 p.1  
<http://www.jeas.jp/doc/20140511murakami.pdf>

나. 신교육장에 대한 우려<sup>88)</sup>

- 교육위원회의 대표로서 교육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특히 현행 「지방교육행정~법」 17조의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을 삭제, 교육장에 치중된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다. 대안으로서 커뮤니티 스쿨 강화<sup>89)</sup>

- 지방공공단체장의 권한 강화로 안정성 및 계속성의 저하,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4년 개정으로 설치된 학교운영협의회 이른바 커뮤니티 스쿨의 강화가 거론됨.
- 주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에 적합한 학교운영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88) 나카지마 테즈히코 「통치기구 재편성으로써의 지방교육행정 제도개혁」, 일본교육행정학회 연구집회 (2014.5.11)자료 p.6

<http://www.jeas.jp/doc/20140511nakajima.pdf>

89) 코마츠 이쿠오, NHK 시점, 논점 (2014년 4월 30일) ‘교육위원회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http://www.nhk.or.jp/kaisetsu-blog/400/187028.html>



##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 1. 호주 교육제도

#### (1)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 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 호주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헌법에 의해 각각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인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가짐.
- 특히 교육권한에 대해서는 「호주연방헌법조례(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가 정하고 있는 정부 권한 조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정부의 헌법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조례 제69조에서 연방정부가 갖는 헌법적 권한으로 우편, 전신, 전화, 국방, 해양, 검역, 세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residual power)은 주정부에서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주연방헌법조례(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5장- 주

호주 연방 헌법조례- 107절 주 의회의 권한

영연방 의회가 예외적으로 만든 헌법에 의하거나 주 의회에서 철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민지(Colony)가 주(state)로 되었을 때 그 의회는 연방이나 주 설립 이후에도 그 권한을 계속 유지된다.

CHAPTER V--The States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SECT 107

Saving of Power of State Parliaments

Every power of the Parliament of a Colony which has become or becomes a State, shall, unless it is by this Constitution exclusively vested in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r withdrawn from the Parliament of the State, continue as a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or as at the admission or establishment of the State, as the case may be.

6장- 정부

호주 연방 헌법조례- 69조 부처 권한의 이동

연방성립 이후 총독의 선언에 의해 각 주에 있는 다음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처는 연방정부 포함된다. 우편, 전신, 전화; 군사, 국방; 등대, 해양; 검역. 세관 부처가 설립되면 연방정부에 포함된다.

CHAPTER II--The Executive Government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SECT 69

Transfer of certain departments

On a date or dates to be proclaimed by the Governor General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the following departments of the public service in each State shall become transferred to the Commonwealth:

posts, telegraphs, and telephones;  
 naval and military defence;  
 lighthouses, lightships, beacons, and buoys;  
 quarantine.

But the departments of customs and of excise in each State shall become transferred to the Commonwealth on its establishment.

- 연방정부의 교육부 조직도<sup>90)</sup>에서도 7개의 주<sup>91)</sup>를 담당하는 부처는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닌 네트워크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업무범위도 각 주의 모든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만 한정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뉴사우스웨일즈주<sup>92)</sup>의 경우 2014-15년도 예산 중 일반정부수입(General Government Sector Summary of Revenues<sup>93)</sup>에서 연방정부에서 배정하는 보조금(Grant revenue)을 보면 교육이 포함되는 일반목적(general purpose)의 보조금은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연방정부에서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정부동의 항목(national agreements), 정부파트너십체결항목(national partnership)과 같이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보조금집행 재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90) 호주 정부 교육부 홈페이지에 첨부된 교육부처 조직도(<http://www.education.gov.au/about-department>). 검색일자 : 2014년 7월. 호주 중앙정부의 교육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교육부장관 밑으로 고등교육 및 연구직, 유학생(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ternational),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Early Childhood, Schools and Youth), 정부위원 서비스센터(Shared Services Centre)의 3개의 조직이 있고 그 중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Early Childhood, Schools and Youth)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아래에만 7개의 주를 관할하는 네트워크 조직(State Network)이 있음.

91) 빅토리아주(Victoria), 서호주(Western Australia), 뉴사우스웨일즈주/호주수도지역(New South Wales/Australia Capital Territory), 퀸즐랜드주(Queensland),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타즈메니아주(Tasmania), 남호주(South Australia)

92)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7개주의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개혁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93) 뉴사우스웨일즈 주 홈페이지의 예산 부분([http://www.budget.nsw.gov.au/2014-15/budget\\_papers/budget\\_paper\\_2](http://www.budget.nsw.gov.au/2014-15/budget_papers/budget_paper_2)). 검색일자 : 2014년 7월. 2014-15년 예산내역 중에 Chapter 6. 일반정부수입(General Government Revenues), 10페이지 표 참고. 연방정부 보조금(Grant revenue)은 일반용도보조금(general purpose), 정부동의항목보조금(national agreements), 정부파트너십체결항목보조금(national partnership)으로 이루어져있음.

- 연방정부 교육부 예산 개요<sup>94)</sup>에서도 특히 유아교육 부분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collaborate) 교육의 질은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나. 일반행정과의 관계

- 호주의 정체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결정은 의원을 겸직하는 교육부장관이 주도하며 지방교육청장(Secretary)<sup>95)</sup>이 장관을 보좌하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호주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통합형이라고 볼 수 있음.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교육행정을 맡는 기관은 ‘커뮤니티&교육청(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으로 미취학 아동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다양한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육 기관, 시설, 프로그램을 관할함.
  - 커뮤니티&교육청의 업무를 살펴보면 애보리진(호주 원주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참전용사, 자원봉사, 청소년과 같이 뉴사우스웨일즈주 안에 다양한 커뮤니티에 따라 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들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돕는 교육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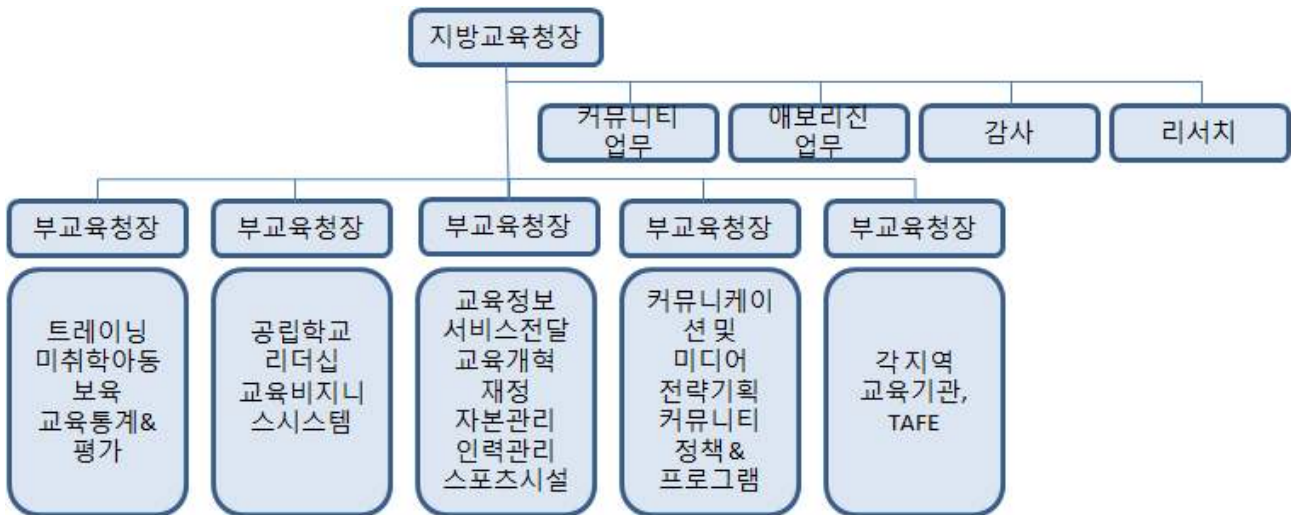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커뮤니티&교육청의 기관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sup>96)</sup>

94) 연방정부 교육부 홈페이지의 예산부분(<http://www.education.gov.au/portfolio-budget-statements-2014-15>). 검색일자: 2014년 7월. 2014-15년 예산 내역 중에 section 1. 부처예산개요(Agency Overview and Resources) 1, 14페이지 참조.

95) 과제 설명자료에 따라 법률상 사무총장(Secretary)은 주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장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지역교육청장이라고 칭함.

지방교육청장(Secretary)과 네 개의 독립기관과 각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다섯 명의 부교육청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교육청장과 부교육청장(Deputy Secretary) 다섯 명, 재정위원(Chief Financial Officer)을 커뮤니티&교육청의 고위공무원단(DEC Executive)이라고 함.



<그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커뮤니티&교육청 조직도>

- 커뮤니티&교육청에서 맡은 업무는 크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공립학교(Public school NSW), 교육사무소(Office of Education), 커뮤니티 사무소(Office of Communities), 애보리진 업무(Aboriginal Affairs)로 나뉜다.<sup>97)</sup>
- 그 중 교육사무소는 유아 교육에서부터 성인 직업훈련까지 폭넓은 교육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을 도움.

96)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 조직도(<http://www.teach.nsw.edu.au/documents/hr/orgchart.pdf>), 검색일자: 2014년 7월.

97)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 홈페이지 중 부처소개(<http://www.dec.nsw.gov.au/about-us/key-people>), 검색일자: 2014년 7월.

(3) 지방교육기관장(지방교육청장)의 권한과 범위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정부부문고용법 2013 No 40(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No 40)」<sup>98)</sup> 제23조에 의해 커뮤니티 &교육청(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의 기관장인 지방교육청장(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이 지방교육기관장에 해당됨.
- 지방교육청장은 정책수행을 위해 여러 공공서비스기관(Public Service agency)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지만 같은 법 제25조에서 명시된대로 부처의 일반적인 업무와 정부핵심가치에 따른 업무를 책임지는 부처 장관에 의해 통제됨.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지방교육청장인 미셸 브루니지(Dr. Michele Bruniges)는 교육사무소(Office of Education)와 커뮤니티 사무소(Office of Communities)를 동시에 이끌면서 교육부장관인 애드리안 피콜리(Adrian Piccoli), 애보리진업무&시티즌쉽&커뮤니티 장관인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장관인 그라함 애네슬리(Graham Annesley) 세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함.
  - 또한 교사의 월급체계 결정, 교사와 정부 연합간의 중재의 업무, 교장과 학교커뮤니티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개혁업무관리도 맡고 있음<sup>99)</sup>.

98)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률 홈페이지 중 「정부부문고용법 2013 No 40(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No 40)」에서 Part 4 공공서비스(The Public Service), Division 2. 기관장(Secretaries of Departments) 부분. (<http://www.legislation.nsw.gov.au/maintop/view/inforce/act+40+2013+cd+0+N>), 검색일자: 2014년 7월.

99) The Telegraph. 2011.07.13. New director-general ticks the boxes. 블로그 기사 참고. [http://blogs.news.com.au/dailytelegraph/maralynparker/index.php/dailytelegraph/comments/new\\_director\\_general\\_ticks\\_all\\_the\\_boxes](http://blogs.news.com.au/dailytelegraph/maralynparker/index.php/dailytelegraph/comments/new_director_general_ticks_all_the_boxes). 검색일자: 2014년 7월.

- 같은 법 제26조에서 지방교육청장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를 대신 하여 커뮤니티&교육청의 고위공무원단(Public Service senior executives), 공무를 수행하는 자<sup>100</sup>), 부처와 관련된 기관의 수장을 임명함.

「정부부문고용법 2013 No40」 23조- 부처의 사무총장

- (1) 부처의 수장을 부처 사무총장이라고 한다.
- (2) 부처 사무총장의 사무소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해 세운다.
- (4) 부처 사무총장 사무소의 구성원은 장관이 임명한다.
- (5) Division 4 조항에 의거해 부처 사무총장 사무소의 구성원은 임명권자와 임명받는 자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명된다. 공무를 수행하는자 중에 임명한다.

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No 40

23 Secretaries of Departments

- (1) The head of a Department is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 (2) The office of Secretary of a Department is established by this section.
- (4) Appointments to the office of Secretary of a Department are to be made by the Minister.
- (5) The appointment of a person to the office of Secretary of a Department is to be made by a contract of employment (under Division 4) between that person and the person who makes the appointment. The person so appointed is a Public Service employee who is employed in the Department.

100) 「정부부문고용법 2013 No 40(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No 40)」 22조에 의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자(Public Service employee)라 함은 부처, 부처와 관련된 공무집행기관, 공공서비스기관에서 일하는 자를 말함.

## 2. 호주의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

### (1) 후보자 자격요건

- 호주의 교육감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청장은 「정부부문고용법 2013 No 40(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No 40)」 제24조 사무총장으로서의 임명 조항에 따라 별도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 지방교육청장이었던 쿠틀 트롯(Mr. Coutts-Trotte)은 교육 경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교사연합(NSW Teachers Federation)과 각종 포럼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청장은 교직 경력이 많은 미셸 브루니지(Dr. Michele Bruniges)로 교체되었음.<sup>101)</sup>

### (2)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임명방식

- 뉴사우스웨일즈주 공무원은 최고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의 의견을 모아서 주지사(Governor)가 임명하거나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해 임명권을 가진 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sup>102)</sup>. 주 공무를 맡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청장은 조항의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지사가 임명함.
  - 최고집행위원회는 주지사가 선발하는 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권고에 따라 임명하는 것으로 주의회의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101)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7.04.11. Give me a chance: school's chief. 기사 참고 <http://www.smh.com.au/news/national/give-me-a-chance-schools-chief/2007/04/11/1175971135891.html>. 검색일자: 2014년 7월.

102) 「뉴사우스웨일즈 주 헌법 1902 No 32(Constitution Act 1902 No 32)」 47절 ‘공무원의 임명’ 부분.

법률에 명시된 지방교육청장의 별도의 자격요건도 없음.

- 해당 부처 기관장의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장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 교육부장관(Minister)은 공무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역교육청장을 임명할 수 있음<sup>103</sup>).
-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며 정책을 이어서 수행할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다른 주의회의 동의나 선거가 필요없음.

「헌법조례 1902 No 32」 47절 공무원 임명

(1) 최고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주지사나 법에 의해 임명권을 가진 자가 뉴사우스웨일즈 주 공무원을 임명한다.

Constitution Act 1902 No 32

47 Appointment of officers

(1) The appointment of all public officers under the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is vested in the Governor with the advice of the Executive Council or in a person authorised by legislation to make the appointment.

「정부부문고용법 2013 No40」 24조 부처 기관장으로 임명

(1) 장관은 부처 기관장의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공석일 때,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임명된 사람은 부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3) 장관은 어느 때라도 기관장 임명을 종료할 수 있다.

(4) 부처 기관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No 40

24 Acting appointments as Secretary of a Department

(1) The Minister may appoint a Public Service employee to act as the Secretary of a Department i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is vacant or if the Secretary is unavailable.

103) 「정부부문고용법 2013 No 40(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No 40)」 24조 ‘사무총장으로서의 임명’ 부분.

- (2) A person, while acting as the Secretary of a Department, has all the functions of the Secretary.
- (3) The Minister may, at any time, terminate an acting appointment.
- (4) The regulations may mak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of a person acting as the Secretary of a Department.

### 3. 호주 교육감(지방교육청장) 선출방식에 대한 특징과 평가

#### (1) 남호주(South Australia) 교육청 사례<sup>104)</sup>

- 남호주에서 교육경력이 없는 자가 지방교육청장으로 임명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음.
  - 학교성폭력이 문제가 되자 남호주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경찰국장이었던 토니 해리슨(Tony Harrison)을 새로운 교육청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는 교육현장과 교육청에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임.
  - 이에 교육위원회(Education Union)에서는 새로운 교육청장이 교육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교육개혁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갑작스럽게 교육청장이 교체됨으로 인한 조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음.
  - 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후임 교육청장 후보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내 포상의 의미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함.

104) ABC, 2013.07.16. New leadership of South Australian Education Department promises change. 기사 참고. <http://www.abc.net.au/news/2013-07-16/new-leadership-of-south-australian-education-department-promise/4822872>. 검색일자: 2014년 7월

(2)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교육청 사례<sup>105)</sup>

-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부 장관이 된 애드리안 피콜리(Adrian Piccoli)는 교육경력이 많은 새로운 교육청장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미셸 브루니지(Dr. Michele Bruniges)를 교육청장으로 임명함.
- 미셸 브루니지는 시드니에서 고등학교, 전문학교, 성인이민자 서비스 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이태리어, 수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으며, 아니라 연방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행정가임.
- 교사와 학부모 그룹이나 교육기관에서 미셸 브루지니에 대한 인기가 있었으며, 이전 지방교육청장의 임명 때와 다른 교육에 대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임.

---

105) The Telegraph. 2011.07.13. New director-general ticks the boxes. 블로그 기사 참고. [http://blogs.news.com.au/dailytelegraph/maralynparker/index.php/dailytelegraph/comments/new\\_director\\_general\\_ticks\\_all\\_the\\_boxes](http://blogs.news.com.au/dailytelegraph/maralynparker/index.php/dailytelegraph/comments/new_director_general_ticks_all_the_boxes). 검색일자: 2014년 7월.